수시연구 2025-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이정아 · 홍장원 · 최석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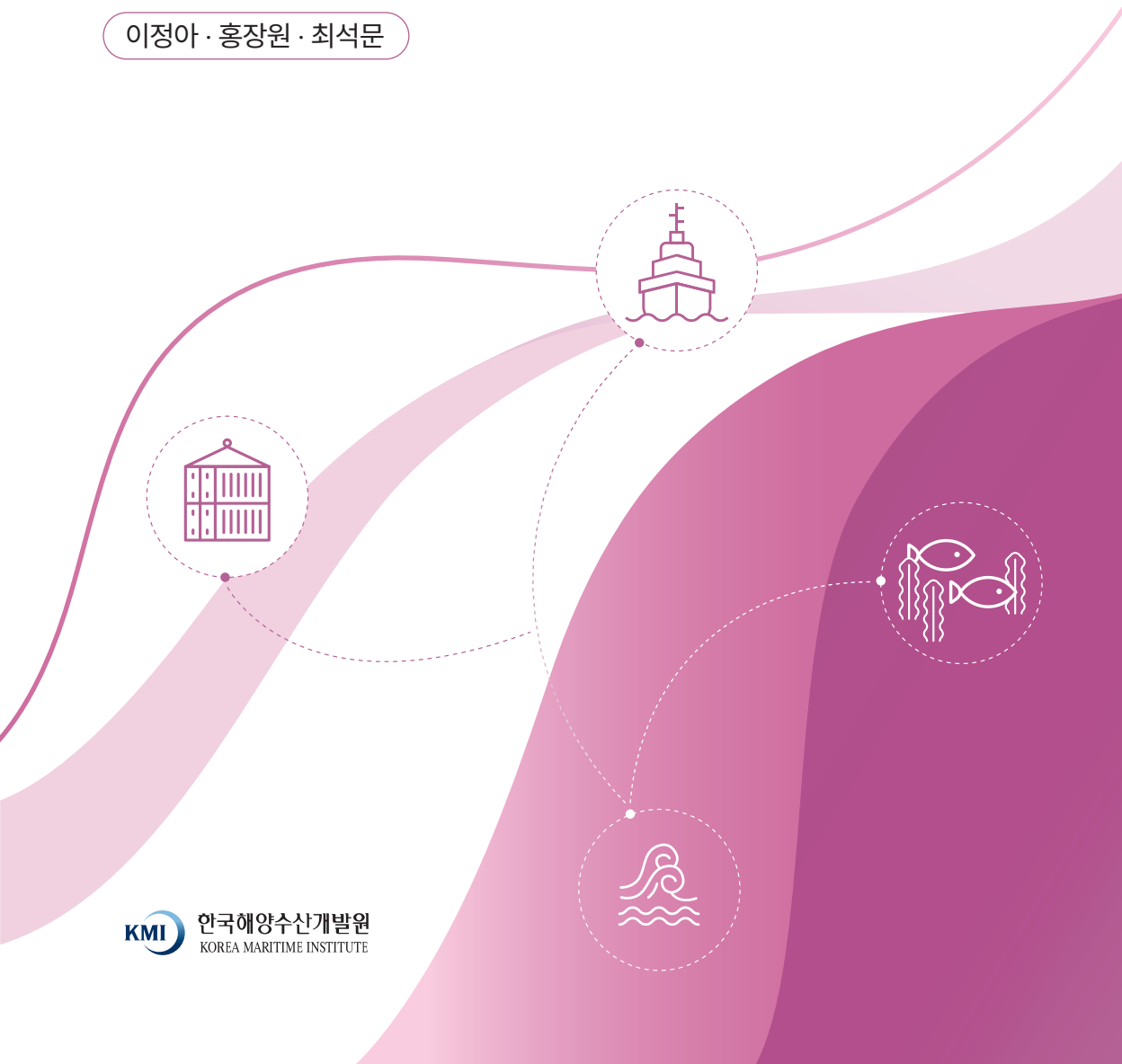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시연구 2025-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이정아 · 홍장원 · 최석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이정아, 홍장원, 최석문**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석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구기간	2025. 11. 1.~2026. 4. 30.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이정아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1절, 제2장 제2절 일부, 제2장 제3절 일부, 제4장 제2절, 제5장
내부연구진	홍장원 제2장 제3절 일부, 제2장 제4절, 제3장 최석문 제2장 제2절 일부, 제4장 제1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윤익준 법무법인(유한) 강남 전문위원 홍성훈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회장 심영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성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조영목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서기관 박은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주무관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1970년대 수중레저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사회·문화·경제적 여건과 해양레저 관광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수중레저를 즐기는 인구는 10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하였다. 국내 수중레저시장은 도입 초기에는 국제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 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활동자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정책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제1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018~2022)'과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수중레저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레저사업자와 활동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 현장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해 체계적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하고,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중앙부처의 정책 수요 대응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외 수중레저 정책 현황과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및 사례를 분석하고,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49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요건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방안,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과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및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중레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수중레저정책의 집행력과 실천성, 현장 적용성 확보를 위한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대상별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수중레저 안전인식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수중레저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정책 및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수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정책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수중레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수중레저정책 및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가 수중레저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해양레저관광산업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이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정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에 참여한 홍장원 선임연구위원, 최석문 부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연구의 결과물과 정책제언들은 수중레저정책 담당자,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산·학·연 전문가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정책협의회와 자문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본 연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자문을 아끼지 않은 홍성훈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조영목 서기관, 박은혜 주무관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보고서 발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여러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6년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xi

01 서론 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8
2. 연구 방법 11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 13
1. 선행연구 검토 13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02 국내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_17

제1절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현황 17
1. 국내 정책 현황 분석 17
2. 국외 정책 현황 분석 22

제2절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26
1.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황 분석 26
2.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및 이슈 분석 29

제3절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사례 분석 39
1. 국내 사례 분석 39
2. 국외 사례 분석 41

제4절 시사점 49

03 수중레저 안전관리 실태 및 한계점 분석 _51

제1절 수중레저 교육단체와 교육체계 51

제2절 수중레저 안전관리 한계와 개선 과제 분석 56

1. 조사 개요 56

2. 결과 분석 57

제3절 종합 분석 70

04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_75

제1절 법·제도 개선방안 75

1.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개선 75

2.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 80

제2절 정책 개선방안 85

1.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85

2.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인식 강화 89

05 결론 및 정책제언 _93

제1절 요약 및 결론 93

제2절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_101

부록 _107

표 목차

〈표 1-1〉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 ····· 4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6
〈표 2-1〉「수중레저법」 제정 전 수중레저 관련 법률 ····· 18
〈표 2-2〉 '제1·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안전관리 정책사업 ····· 20
〈표 2-3〉 수중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찰청 이관 업무 개요 ····· 21
〈표 2-4〉 일본 '다이빙선 안전대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25
〈표 2-5〉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 ····· 27
〈표 2-6〉「수중레저법」의 주요 내용 ····· 30
〈표 2-7〉「연안사고예방법」의 주요 내용 ····· 31
〈표 2-8〉 동행입수 필요 안전관리요원 인원수 예시 ····· 41
〈표 2-9〉 WRSTC의 다이빙 기준 자료 ····· 47
〈표 2-10〉 WRSTC의 '구조 다이버 최소 교육과정 기준' 내용 ····· 48
〈표 3-1〉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 ····· 54
〈표 3-2〉 수중레저 교육단체 의견조사 개요 ····· 56
〈표 3-3〉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단계와 교육 과정 ····· 63
〈표 3-4〉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중요성 및 시급성) ····· 68
〈표 3-5〉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체계 분류(1) ····· 72
〈표 3-6〉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체계 분류(2) ····· 73
〈표 4-1〉 안전관리요원 관련 수중레저법령 주요 내용 및 한계점 ····· 76
〈표 4-2〉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개선 관련 개정안 ····· 79
〈표 4-3〉 수중레저교육자 관련 수중레저법령 주요 내용 및 한계점 ····· 81
〈표 4-4〉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 관련 개정안 ····· 83
〈표 4-5〉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방안 ····· 88
〈표 4-6〉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 방안 ····· 91
〈표 5-1〉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제언 ····· 98

그림 목차

〈그림 1-1〉 수중레저활동자 현황 ····· 2
〈그림 1-2〉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 ····· 3
〈그림 1-3〉 연구 목적 ····· 7
〈그림 1-4〉 국정과제와 연구의 관련성 ····· 7
〈그림 1-5〉 연구 추진 체계 ····· 9
〈그림 1-6〉 내용별 연구 방법 ····· 11
〈그림 1-7〉 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 12
〈그림 2-1〉 '제1·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 19
〈그림 2-2〉 일본 '다이빙선 안전대책 가이드라인'과 출항 전 체크리스트 ····· 24
〈그림 2-3〉 일본 수중레저 안전사고 대응 흐름도 ····· 25
〈그림 2-4〉 수중레저 안전사고 원인(2020~2024) ····· 27
〈그림 2-5〉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원인(2020~2024) ····· 28
〈그림 2-6〉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 체계 ····· 32
〈그림 2-7〉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체계 ····· 34
〈그림 2-8〉「연안사고예방법」의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 37
〈그림 2-9〉 야간 수중레저 단속 사례와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 40
〈그림 2-10〉 일본 C-card 발행 규모(2018~2025, 남·여 엔트리 레벨) ····· 43
〈그림 2-11〉 일본 엔트리 레벨 C-card 발행 연령 분포(2025년) ····· 43
〈그림 2-12〉 일본 해난사고자 수(2023년) ····· 44
〈그림 2-13〉 일본 수중레저활동자 사고 동향(2019~2023) ····· 45
〈그림 2-14〉 일본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가이드 자료 ····· 46
〈그림 2-15〉 WRSTC의 구성과 주요 수중레저교육 기관 ····· 46
〈그림 3-1〉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절차 ····· 52
〈그림 3-2〉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구성 ····· 53
〈그림 3-3〉 연도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 동향 ····· 55
〈그림 3-4〉 수중레저 교육단체 동향 ····· 57
〈그림 3-5〉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국내 설립 시기 ····· 58
〈그림 3-6〉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현황 변경 여부 ····· 59
〈그림 3-7〉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현황 변경신고 필요성 ····· 59
〈그림 3-8〉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현황 변경 절차에 대한 의견 ····· 60

〈그림 3-9〉 수중레저 교육단체 교육과정 분류체계 예시 ····· 61
〈그림 3-10〉 수중레저 교육단체 교육과정 구분 ····· 62
〈그림 3-11〉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지원 사항 ····· 64
〈그림 3-12〉 수중레저시장 동향 파악 기초 자료 ····· 65
〈그림 3-13〉 국내 수중레저시장 전망(향후 3년) ····· 66
〈그림 3-14〉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1순위, 1~5순위) ····· 67
〈그림 3-15〉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1순위, 1~5순위) ····· 67
〈그림 3-16〉 수중레저사업 제약 요인 ····· 69
〈그림 3-17〉 수중레저 안전관리요원 기준 검토 ····· 71

정책제안

▌분석 내용 및 방법

1.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중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실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통계 자료, 유관 법률, 정책보고서, 학술자료 등 검토를 바탕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 현황과 관련 사례 분석

2. 수중레저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검토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49개소를 대상으로 의견조사 실시

3.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자문 수행

4.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정비 수요와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부처 수중레저 업무 담당자와 정책협의회 개최

▌정책제안

1.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정비 방안 제시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신고·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 근거를 「수중레저법」에 신설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마련하며, 기타 사항은 고시를 통해 규정

2.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른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등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활용하는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추진
-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어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내용의 전문화·맞춤화 방안 모색,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 등 수중레저 안전교육 체계 고도화 추진

요 약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 홍장원 · 최석문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수중레저 활동자 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법·제도와 정책의 정비 필요**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에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이 불충분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안정성이 미흡
-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 체계적인 수중레저 정책 추진과 법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규정 마련 시급

2) 국정과제 연계성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으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 조성에 기반한 해양관광 수요 확대,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의 체계성·실천성 강화를 통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과 창의적 문화국가로 도약하고,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정책 및「수중레저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분석 외에 의견조사와 인터뷰 등 정성적 분석을 혼합적으로 활용**

- 수중레저 정책, 안전관리 현안 및 사례에 대한 통계자료, 법령자료,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수행

-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방안,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 도출

-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방안 도출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산업계 의견조사 및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부처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단계별 정책 수요처인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수중레저법」 개정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되어 자체연구로 수행
  - 과제 제안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구체화
-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수중레저 분야 대학 및 민간 단체의 전문가, 해양관광 및 법률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제언의 체계성 및 실천성 강화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1970년대 국내에 수중레저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활동자 증가와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증가**
  - 정부는 「수중레저법」 제정 및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중레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정책 기반 마련
  - 그러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흡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체계성 강화 및 정책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 정비 방안 제시**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신고·자료제출 등 의무 부과 근거를 「수중레저법」에 신설하고, 관련 세부 규정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마련하며, 기타 사항은 고시를 통해 규정
-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및 안전인식 강화를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제시**

- 단기·중장기로 구분하여 단계에 따른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등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활용하는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추진
-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 어업인 등 대상별 맞춤형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 내용의 전문화·맞춤화 방안 모색,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 등 수중레저 안전교육 체계 고도화 추진

2) 정책화 방안

▪ **수중레저 안전관리 제도의 체계성 강화 및 정책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제시**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 마련 제안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수중레저법」에 의무 부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세부 규정 신설 제시

▪ **수중레저정책의 집행력·실천력,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추진**

- 단기적으로 기존 통계 데이터를 목록화, 기초 정보 파악, 기존 해양관광산업 통계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수중레저 활동자 및 산업 규모 파악 제안
- 중장기적으로 수중레저사업체 패널조사와 장비 분야 조사 체계 개발, 정책 담당자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제안

▪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활동자의 안전인식 강화 교육 추진**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등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 활용하여 아동기부터 수중레저 참여 기회 확대, 안전인식 체득 방안 제안
-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해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업인의 상호 이해 제고 방안 제안
- 장기적으로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교육 내용 전문화·맞춤화 방안 모색,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 추진 제안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방안 제시**

- 과제를 제안한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 주요 이해관계자인 수중레저 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 수중레저 업무 담당자,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수중레저 및 해양관광, 법률 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수중레저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화 및 정책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 실천성 및 수용성 제고

-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 조성에 기반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연안지역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환경 조성 및 수중레저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정비
- 수중레저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통해 수중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연안지역을 기반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Jung-A Lee · Jang-Won Hong · Seok-Mun Choi

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There is a pressing need to reform the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frameworks governing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foster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 Safety management provision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under the *Act on the Safety and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hereinafter "the Underwater Leisure Act"); however, the insufficiency of detailed subordinate provisions has resulted in inadequate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Act.

- In particular, the Act currently lacks clear provisions in two critical areas: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engaged in nighttim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nd the oversight of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Addressing these regulatory gaps is a matter of urgency for ensuring coherent policy implementation and consistent enforcement of the Act.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By develop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to reform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expanding marine tourism dem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nditions for saf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nd to broadening the base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coastal regional economies.

- The findings are intended to serve as policy reference material for strengthening the systematic coherence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This will contribute to revitalizing fishing village and coastal economies,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the tourism industry, and advancing Korea as a creative cultural nation rooted in thriving rural, mountain, and fishing communities.

3) Purpose

- This study aims to put forward improvement measures for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the Underwater Leisure Act in order to promot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Specifically,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engaged in nighttim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re established, alongside systematic oversight measures for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Together, these measures lay the institutional groundwork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s

- This study combines a literature review with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surveys and interview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varying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across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 A literature review is conducted drawing on statistical data, legal and regulatory materials, academic literature, and policy reports pertaining to underwater leisure policies, safety management issues, and relevant cases.
  - Surveys targeting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fficiall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re conducted to deriv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management measures for accredited organizations, and policy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expert consultations in underwater leisure, marine tourism, and law, as well as inter-ministerial policy consultations are applied to identify policy,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for improving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This study comprehensively integrat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 industry surveys and consultations, and inter-ministerial policy consultations. With these efforts, the study seeks to strengthen the systematic coherence of improvements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and ensure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2) Policy Formulation Method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response to government demand for timely policy research on current issues. At each stage of the research process, improvement directions for laws, institutions, and policy were discussed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which transferred jurisdiction over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

ment to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this study was identified as an urgent priority for the systematic advancement of related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was conducted as a self-initiated research project.

-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study were clearly established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that proposed this research, and alternatives informed by field-level perspectives were developed accordingly.
-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as the primary stakeholders, to formulate concret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hat take field conditions into account.

▪ Drawing on expert input from the fields of underwater leisure, marine tourism, and law, this study identifies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 measures related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 Through consultations with experts from universit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underwater leisure, and from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marine tourism and law, the systematic coherence and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strengthened.

3. Result

1) Summary

- Since underwater leisure was first introduced in Korea in the 1970s, growing participation and market expansion have led to rising policy demand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the formulation of a statutory master plan, the government has laid a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foundation for the systematic advancement of underwater leisure policy.
  - However, inadequate provisions governing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and the management of accredited organizations for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have left gaps i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must be addressed to ensure the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policy.
- Developing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is necessary to promot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Through the reform of relevant institutional frameworks, the systematic coherence of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will be strengthened and consist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ensured, thereby reinforcing the policy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reform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its subordinate legislation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To clearly defin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are to be amended, the terminology of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s to be standardized, and provisions on safety management personnel qualifications are to be established therein.
- The Underwater Leisure Act is to be amended to establish legal grounds for imposing obligations such as reporting and document submission on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Related detailed provisions are to be set out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with remaining matters addressed through ministerial notices.

-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for promoting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by reforming the statistical system and raising public safety awareness.**

- A phased underwater leisur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is established across short-term and medium-to-long-term timelines to reform the statistical system. In parallel, existing data systems, including the Marina Information System, are reorganized and utilized to support this reform.
- To strengthen safety awareness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existing programs, including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lass,” “Outreach Survival Swimming Class,” and “Education

Program for Fishers", are leveraged to develop and provide customized safety education programs tailored to specific target groups such as children, youth, and fishers.

-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education system is further developed by expanding the scope of safety education, specializing and customizing educational content, and developing diverse educational approaches.

2) Policy Recommendations

▪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to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its subordinate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systematic coherence of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nsure consistency in policy implementation.

- To clearly defin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this study proposes amending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standardizing the terminology of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t further recommends establishing dedicated provisions on safety management personnel qualifications within the aforementioned Regulations.
- To improve the management framework for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this study proposes establishing obligation-related provisions in the Underwater Leisure Act and adding detailed provisions in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Underwater Leisure Act.

- **The underwater leisure statistical system is reformed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city and practical effectiveness of underwater leisure policy and ensure its applicability in the field.**
  - In the short term, this study proposes cataloging existing statistical data, identifying baseline information, and conduct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existing marine tourism industry statistics to assess the scale of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the industry.
  - In the medium-to-long term, this study proposes developing a panel survey of underwater leisure businesses and a survey framework for the equipment sector, and establishing a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system for continuous use by policy officials.
- **Safety awareness education for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is advanced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grounded in safe practice.**
  - By drawing on existing programs such as the "Marine Leisure Sports Experience Class" and "Outreach Survival Swimming Class,"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underwater leisure participation from childhood and helping participants internalize safety awareness.
  - Leveraging the "Education Program for Fishers," this study proposes providing codes of conduct for preventing underwater leisure safety accidents as a means of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fishers.

- In the long term, proposals are made to broaden the target population for underwater leisure safety education, explore ways to specialize and customize educational content, and develop diverse educational approaches.

▪ This study proposes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Improvement measures for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discussed through policy consultations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that proposed this research, and through stakeholder consultations with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as the primary stakeholders.
- Concrete improvement measures are developed through consultations with underwater leisure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ccredited underwater leisure instructor training organizations, and experts in underwater leisure, marine tourism, and law.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This study contributes to reinforc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foundation for promoting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and fostering related industries by developing measures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aimed at systematizing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and strengthening enforcement capacity are proposed,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and acceptability of policy.
- By exploring promotion measures grounded in establishing conditions for safe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that raises public interest in marine tourism and broadens participation.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related to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broadening the base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n coastal regions.
- By proposing measures to improve the underwater leisure safety management syste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s for creating a safe underwater leisure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underwater leisure promotion policies are reformed.
- Strengthening the field applicability of underwater leisure policy reinforces the safety of underwater leisure participants and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marine tourism industry in coastal regions.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수중레저활동'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2)] 스킨다이빙(Skin diving)은 수면에서 들이마신 공기만으로 수중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며 즐기는 잠수 활동으로 수중 호흡장치를 제외한 잠수경, 숨대롱, 잠수복, 오리발, 무게추 등의 장비를 사용한다.[3)] 이에 반해 스쿠버다이빙(Scuba diving)은 호흡기, 공기통, 부력조절기와 같은 수중 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비교적 깊

1) 본 연구는 2025년 9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접수된 연구과제 수요조사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제안(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을 토대로 수행함. 본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업무협의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과제 기획 단계부터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정비)을 중심으로 연구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함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3) 해양수산부(2022a), p. 5.

은 수중을 장시간 잠수할 수 있다.[4] 최근 활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프리다이빙(Free diving)은 호흡장치 없이 무호흡으로 더 오래 더 깊이 잠수하여 기록 경쟁을 하는 스포츠 성격의 활동으로 스킨다이빙의 일종이다.[5]

수중레저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70년대로, 이후 사회·문화 여건 변화와 경제 성장, 해양관광 트렌드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가 2015년 70만 명에서 2024년 148만 명 규모로 성장했다.[6]

〈그림 1-1〉 수중레저활동자 현황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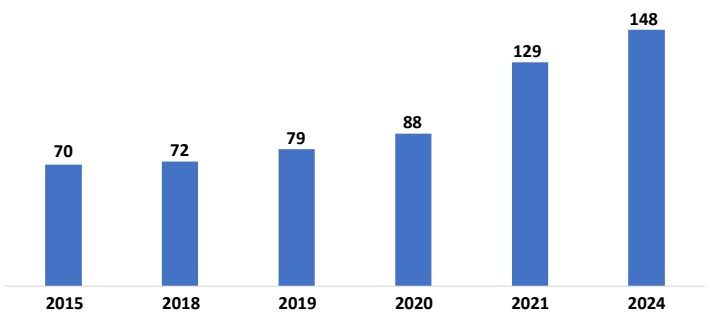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2023), p. 5; 해양수산부(2024b)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중레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내 수중레저시장은 국제 민간 교육단체(PADI, NAUI, CMAS, BSAC, SSI 등)[7]의 교육 표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8] 이들 교육기관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훈련 체계와 자격 제

4) 스쿠버는 '수중 자가 호흡장치(SCUBA: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를 의미함 (해양수산부(2022), p. 5.)
5) 해양수산부(2022), p. 5.
6) 2024년 수중레저활동자 규모는 해양수산부(2024b)를 활용하여 도출함.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천 명을 대상으로 인구구성비에 따라 성·연령·지역을 비례할당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했으며, 수중레저활동 경험 비율을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환산하여 계산함
7) PADI(Professional Association of Diving Instructors), NAUI(National Association of Underwater Instructors), CMAS(Confédération Mondiale des Activités Subaquatiques), BSAC(British Sub-Aqua Club), SSI(Scuba Schools International)

도를 갖추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 장비 사용법, 응급상황 대응, 기타 준수사항 등 수중레저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품질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9] 그러나 민간 교육기관이 전문성에 기반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중레저활동자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와 수중레저사업의 발전을 위해 「수중레저법」을 제정, 수중레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0]

정부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중레저법」을 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등 기구와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안전관리 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수중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림 1-2〉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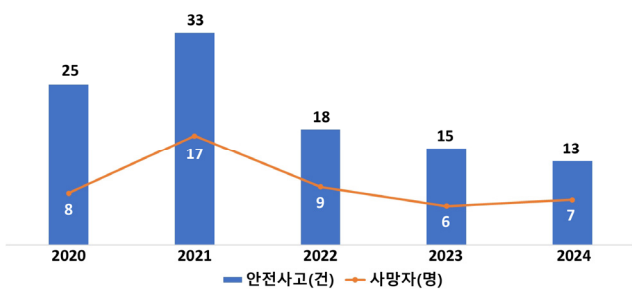

자료: 해양경찰청(2024.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8)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p. 2.
9) 장유락·국승기(2025), pp. 127-128; 정경화(2020), pp. 47-48.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검색일: 2026.2.5.)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총 104건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은 평균 45.5%로 사고가 발생하면 절반 정도의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전체 사고자 수 대비 사망자 수의 비율은 평균 32.8%로 나타나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표 1-1〉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사고건수(A)	25	33	18	15	13	20.8
사고자수(B)	50	38	26	19	19	30.4
사망자수(C)	8	17	9	6	7	9.4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 (C/A)	32.0	51.5	50.0	40.0	53.8	45.5
사고자수 대비 사망자수 (C/B)	16.0	44.7	34.6	31.6	36.8	32.8

자료: 해양경찰청(2024.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30분 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는데, 이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이 낮 시간에 비해 지형, 수심, 장애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동반자와의 의사소통에도 제약이 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제한이다. 「수중레저법」은 예외적으로 야간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경우에 한하여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허용하고 있다.[11] 그러나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하게 야간 수중레저활동

을 즐기는 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법령을 해석·운용하는 정책 현장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는 수중레저교육자를 양성하고, 수중레저교육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를 교육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즉,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는 수중레저교육자를 매개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역량을 결정하는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이다.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관리 부실은 수중레저 교육의 신뢰도와 전문성 약화, 수중레저교육자의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하고,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용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수중레저정책을 안전관리 측면에서 살펴보고, 본 연구의 대상인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안과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어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운영 실태와 한계점을 진단하고 「수중레저법」과 수중레저정책의 개선 방안 등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비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1) 수중레저법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제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수중레저정책 현황을 안전관리 측면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고,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 현안과 이슈,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현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진 워크숍을 통해 설문조사를 설계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수중레저 교육단체 및 협회 등과 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수중레저정책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연구 성과의 정책화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중레저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체계성과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고,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과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국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12)]

12) 대한민국 정부(2025), p. 3, p. 114, p. 167.

〈그림 1-3〉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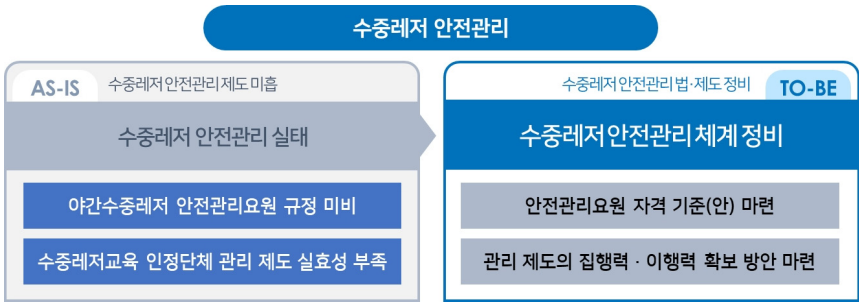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수중레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지만, 활동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상존하므로 수중레저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이다. 연안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중레저활동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는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과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4〉 국정과제와 연구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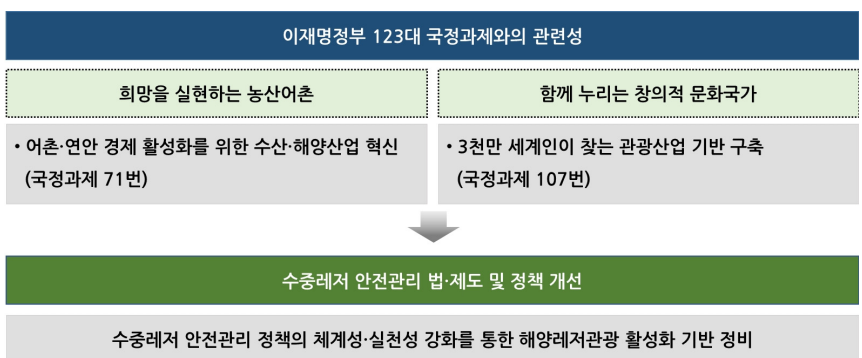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5), p. 114, p. 16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요건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제도를 중심으로 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은 국정과제 71번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과 107번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1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중레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중'으로 국내 해수면과 내수면의 밑으로 한정하며,[14)] 시간적 범위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하되 수집·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생산 시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제도 중에서도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제도의 집행력 강화 방안에 초점을 두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13) 대한민국 정부(2025), p. 114, p. 167.
14) 해수면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의미하며, 내수면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의미함(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6.1.28.))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수중레저 정책 현황과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및 사례를 분석하고, 해양수산부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 고시한 49개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요건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방안,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5〉 연구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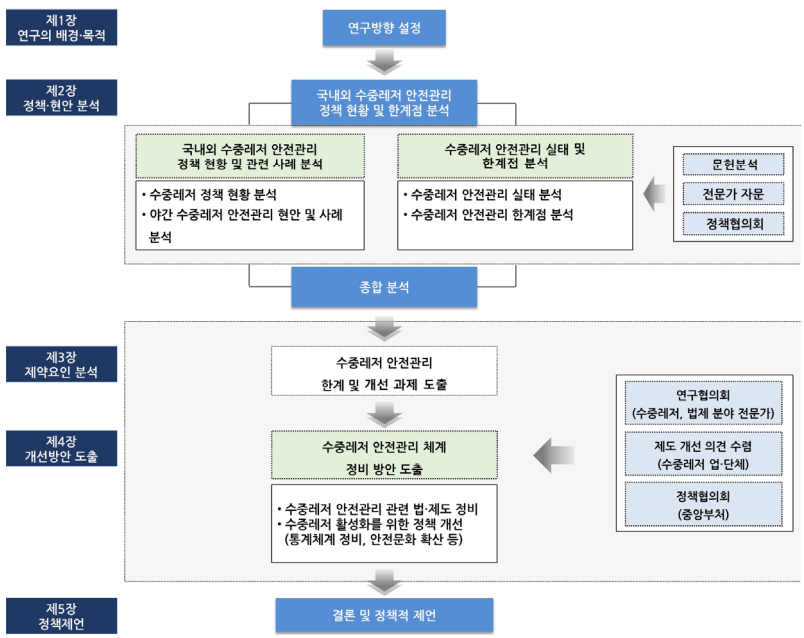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2장에서는 국내외 수중레저 정책과 사례를 안전관리 측면에서 살펴본다. 특히 앞서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안과 사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국내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현황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와 사회·문화 및 제도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와 비교·분석한다. 다음으로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야간 수중레저활동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고,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수중레저 정책 및 법·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운영 실태와 한계점을 분석한다.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전문성 있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로, 2025년 기준 총 49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한 국내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과 사례,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운용 실태 및 한계점 등을 바탕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법·제도 및 정책 제언은 수중레저 및 법제 분야 전문가 자문, 해양수산부 수중레저 업무 담당자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체계성과 실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수중레저정책과 안전관리를 분석한 학술 및 정책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수중레저정책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현안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의견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수중레저 및 법제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병행하였다.

〈그림 1-6〉 내용별 연구 방법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도출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더욱 효과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수중레저정책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와 총 5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 착수 전 단계에서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을 검토하고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여 연구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연구 추진 단계에서는 수중레저 안전사고 정책자료 공유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의견조사 지원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안)에 대한 숙의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 단계에 따라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의 적용 가능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였다.

〈그림 1-7〉 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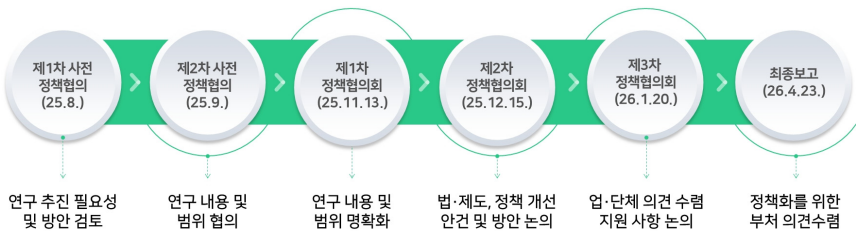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수중레저정책 현황을 다룬 선행연구를 안전관리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야간 안전관리 현안 및 사례를 분석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법·제도적 측면에서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요원의 자격 기준(안)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방안 등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수중레저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하여 검토한 후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를 비롯하여 국외에서도 수중레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수중레저 안전관리나 야간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중레저 분야의 민간 교육단체나 안전·인명구조 단체 등에서 활동,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수중레저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가 제정·운용되고 있는 국가가 드물고 대부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수중레저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중레저법 및 본 법에 근거하여 법정 기본계획과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중레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 연구,[15] 수중레저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법·제도 개선 방안을 분석한 연구[16]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수중레저법 등 관련 법률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17] 등이 수행되었다.

국외의 수중레저 안전관리 및 제도 개선을 다룬 연구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한 연구나,[18] 레저 목적의 수중레저활동 외에 연구 및 산업적 목적의 잠수활동에 대한 기준 등을 분석한 연구[19]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안전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부분적 분석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20]

2.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연구 목표와 연구 대상 및 범위, 연구 방법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우선 연구 목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었으므로, 국내외 수중레저를 다룬 연구 중에서도 수중레저 관련 법·제도와 정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 목표 측면에서 기존 국내 연구는 수중레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수중레저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대부분이며, 해외 연구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나 안전·인명구조단체 등에서 활동, 안전사고 현황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하여 야간 수중레

15)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해양수산부(2014), 해양수산부(2024a)
16) 해양수산부(2017b), 해양수산부(2022b)
17) 정경화(2020), 윤병두(2020), 한동일 외(2022), 장유락(2025)
18) Divers Alert Network(2020)
19) NOAA(2025)
20) 주요 선행연구 검토는 부록 참고

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관리 체계 정비 방안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도 국내에서는 수중레저활동자나 수중레저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활동자 지원 및 산업 육성 방안, 수중레저기구 및 장비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해외에서는 수중레저 안전사고의 현황과 결과를 분석하는 민간 수중레저 단체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국내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화 방안,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관리 체계 정비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가 수중레저활동자 지원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면, 본 연구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해 국내외 문헌연구, 법률분석,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정책협의회,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대상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참고문헌	
연구 목표	•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정책방향 제시, 정책사업 발굴 및 법제 마련,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 (국외)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수중레저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 정경화(2020) • 한동일 외(2022) •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 해양수산부(2014, 2017b, 2022b, 2024a) • Divers Alert Network(2020) • NOAA(2025)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자격 기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관리 체계 정비 방안 제시
연구 대상 및 범위	• (국내) 수중레저활동자 또는 수중레저산업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활동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활동자 지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 (국외) 수중레저활동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연구 수행	• 윤병두(2020) •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 해양수산부(2014, 2017b, 2022b, 2024a) • Divers Alert Network (2020) • NOAA(2025)	• 국내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와 정책화 방안을 연구대상으로 설정
연구 방법	• (국내) 문헌조사, 사례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 활용 • (국외) 설문조사,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의 연구방법 활용	• 윤병두(2020) • 정경화(2020) • 한동일 외(2022) •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 해양수산부(2014, 2017b, 2022b, 2024a) • Divers Alert Network (2020) • NOAA(2025)	• 수중레저 관련 문헌연구 및 법률 분석 •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황 및 관련 이슈 분석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도출 •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으로 부처 의견 수렴 • 정책협의회, 전문가 자문, 의견조사 등을 통한 정책화 방안 도출

자료: 저자 작성

02
국내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현황 및 사례 분석

제1절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현황

1. 국내 정책 현황 분석

우리나라는 1970년대 해군에서 스쿠버 기술을 익힌 다이버들이 일반인에게 이를 가르쳐주면서부터 레저 목적의 수중레저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21] 도입 초기에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와 소속 강사를 중심으로 자체 안전교육과 매뉴얼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수중레저활동자와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표준 교육체계와 장비 기준이 부재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수중레저활동자 운송 사업의 법적 근거 부재로 해경 등 단속기관과 마찰을 빚었고,[22]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수중

21) 해양수산부(2022a), p. 2.

22) 수상레저기구, 낚시 어선 또는 모터보트(유선) 등을 이용하여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제정된 법이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적용되며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수중레저 활동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장유락(2025), p. 160.)

레저사업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23] 이에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수 법률에 산재되어 관리되던 수중레저 관련 규율을 통합 정비하여 2016년 「수중레저법」이 제정되었다.

〈표 2-1〉「수중레저법」 제정 전 수중레저 관련 법률

구분	관련 법률
수중레저활동 및 안전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수상레저활동 안전수칙 • 어촌·어항법: 어촌관광사업의 진흥,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물 채취,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연안체험활동 신고, 보험가입, 안전수칙
수중레저 이동수단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 이용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어선 이용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이용 • 해사안전법: 유선 및 기타 선박의 이동
수중레저활동 공간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관광의 진흥 및 해중경관지구의 지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자료: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p. 66; 해양수산부(2022b), p. 18. 재인용

「수중레저법」 제정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수중레저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1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발표하였다. 제1차 계획은 '해양레저관광의 영토가 수중까지 확대됩니다'라는 비전 하에 4대 전략과제와 11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11개 세부 추진과제 중 55%만 추진되는 등 계획 기간 내 달성하지 못한 사업이 많고, 추진된 사업의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정책 개선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24] 이에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수중레저

23) 해양수산부(2022a), pp. 2-3.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사업을 보완하여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023~2027)'이 수립되었다. 2023년 발표된 제2차 계획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 함께 즐기는 수중레저'라는 비전 하에 4대 추진전략과 8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그림 2-1〉 '제1·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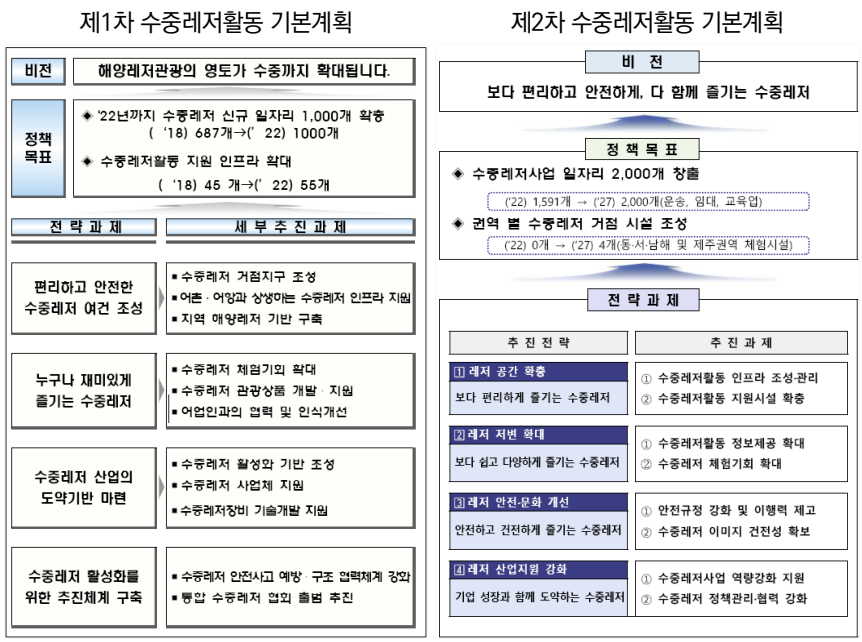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2018), p. 6; 해양수산부(2023), p. 7.

정부는 「수중레저법」에 따라 수립된 제1·2차 계획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1차 계획 기간에는 수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

24) '제1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20개 세부 계획에 대한 집행 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이며, 추진 완료된 사업은 9건, 추진되지 못한 사업은 10건임. 4대 전략과제별 정책사업 집행 실적은 '수중레저 산업의 도약기반 마련' 전략의 세부 계획 달성률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누구나 재미있게 즐기는 수중레저' 전략이 42.9%로 가장 낮게 분석됨(해양수산부(2022b), p. 26.)

경찰청 및 연안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구조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 제2차 계획 기간에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점검의 내실화 및 수중레저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수중레저활동자와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병행하였다. 제1·2차 계획에 따라 추진된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2-2〉 '제1·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안전관리 정책사업

구분	정책사업
제1차 계획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구조 협력체계 강화 –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해경·지자체 등 협업을 통한 구조협력 체계 강화 •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및 안전 이벤트 참석 지원
제2차 계획	• 수중레저 안전규정 강화 – 사업자: 입출수 등 안전확보 필요시 관리자 배치, 종사자 정기 교육체계 관리, 수중레저시설물 안전기준 등 마련 – 활동자: 지역별 활동자 위해요소 식별 및 금지구역 지정, 야간 수중레저활동 준수의무 강화 등 •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 안전점검 내실화, 종사자 법정교육 및 자격관리 강화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전개

자료: 해양수산부(2018), p. 16; 해양수산부(2023), pp. 16-1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중레저법」 제정 이후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시설·장비 기준 설정, 안전점검 등은 해양수산부가 수행해 온 반면, 안전사고 대응과 구조 활동은 해양경찰청이 관할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다. 특히 수중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와 행정 공백, 규제 중복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25] 이러한

25) 장유락·국승기(2025), p. 126.

정책·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2025년 4월 해양수산부의 수중레저 관련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을 보완하는 「수중레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6] 본 개정으로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양경찰청에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정 집행 주체와 실제 집행 주체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3〉 수중레저 안전관리 등 해양경찰청 이관 업무 개요

구분	내용
개정 내용	•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추진 배경	• 현재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록 사무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대다수 수중레저 활동이 해수면에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단속 및 전문적인 안전관리 어려움 존재 • 수중 및 수상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해양경찰청에 안전 및 등록 사무를 이관, 안전관리와 등록기관을 일원화하여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도모
주요 내용	• (수중레저사업 등록사무 이관) 수중레저사업 등록·휴폐업 등, 이용요금의 신고, 행정처분 등의 사무를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에서 수행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사무 이관) 안전점검 실시 및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중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를 해양경찰청에서 수립
시행일	• 2026년 4월 23일

자료: 202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검색일: 2026.2.7.)

26) 202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검색일: 2026.2.7.)

2. 국외 정책 현황 분석

우리나라에 수중레저가 소개된 이후 「수중레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와 강사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이 이루어졌다. 이후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중레저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가 활성화된 국가 중에는 법률을 통해 사업자와 종사자의 의무를 규율해 수중레저사업을 육성하는 국가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국가도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몰디브, 몰타, 호주 등이 대표적이며, 후자에 속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등이 있다. 국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와 사회·문화적 환경이 유사하고 해양공간 이용 방식과 어업 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일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본의 수중레저활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쿠버다이빙 공기통의 본격적인 수입이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대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수중레저시장 규모가 크고, 성숙 단계의 수중레저산업을 형성하고 있다.[27] 2025년 기준 엔트리 레벨 C-card 발급자가 약 2만 8천 명에 이르며,[28]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신규 수중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중레저시장과 산업 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레저 목적의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도입하지 않았으며, 수중레저 관련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27)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p. 84.
28) Cカード協議会, 動向調査, 2025年認定動向調査結果(검색일: 2026.2.7.)

2000년 이후 스쿠버다이빙 공기통 충전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의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스쿠버다이빙 고압가스안전협회가 자발적으로 '압축공기순도기준'과 '탱크 및 탱크 밸브의 취급기준'을 마련했으며 사업자들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29]

일본의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는 활동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활동자를 대상으로 실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상보안청에서 구조를 담당하는데 수중레저사업장과 해상보안청, 소방청, 대학병원 등으로 연계되는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중레저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활동 전 이를 활용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시 민간의 비영리 다이빙 안전 전문기관인 DAN(Divers Alert Network)도 사고 대응 체계에 협력하여 수중레저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 의료지원, 안전교육, 보험 등을 지원한다.[30]

일본 중앙정부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함으로써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토교통성은 2025년 7월 '다이빙선 안전대책 가이드라인(ダイビング船の安全対策ガイドライン)'을 발표했다. 최근 다이빙선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다이빙선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이빙선박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라인과 출항 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이빙선박의 선장, 다이빙선박 소유자, 수중레저사업자, 활동자 등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을 전국 단위로 정리한 종합 안전 지침이다.

29) 정경화(2020), p. 53.

30) 일본 DAN(Divers Alert Network)은 일본해양레저안전·진흥협회(日本海洋レジャー安全·振興協会)가 운영하는 비영리 다이빙 안전 단체로 "Divers helping divers"라는 슬로건 하에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 지원, 다이빙 보험, 안전 정보, 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함(DAN Japan(검색일: 2026.2.7.))

〈그림 2-2〉 일본 '다이빙선 안전대책 가이드라인'과 출항 전 체크리스트

자료: 国土交通省, ダイビング船の安全対策について(검색일: 2026.2.7.)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② 다이빙선박 선장 등이 운항 시 준수해야 할 사항, ③ 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④ 지역 연계 및 안전 활동의 조성, ⑤ 장비 중량을 고려한 승객 수 제한 및 중량물의 선내 배치, ⑥ 다이빙 목적 선박 사용 시 선박 검사 등 총 6개 항목이다. 가이드라인은 수중레저 안전사고 대응 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상보안청과 소방, 경찰, 지역 의료기관, 다이빙 안전대책 협의회, 수중레저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의식·호흡 유무에 따라 대응 방식이 구분되며, 단계적으로 연계된 대응 구조가 형성·운영되고 있다. 즉, 일본의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는 '현장 초기 대응 – 관계 공공기관 구조 – 의료기관 이송 – 민간단체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표 2-4〉 일본 '다이빙선 안전대책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 운항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등의 설정, 비상 시 대응 계획 수립, 승선자 명부 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다이빙선박 선장 등이 운항 시 준수해야 할 사항	• 선박 안전점검 실시, 정박 안전 대책, 적절한 감시(견시) 실시, 수중레저활동 중 국제 신호기 '알파기' 게양, 프로펠러 사고 방지
활동자 및 수중레저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보트 다이빙 관련 강습 수강, 운항 사업자별 가이드라인 대응 상황, 이를 고려한 적절한 선박 선택,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지역 연계 및 안전 활동의 조성	• 사업자 간 연계 강화(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학습회·스터디 모임 실시, 지역별 규칙 수립), 강습·훈련의 실시 및 참여, SNS를 활용한 정보 공유
장비 중량을 고려한 승객 수 제한 및 중량물의 선내 배치	• 적재 가능한 장비 수량·중량·적재 위치에 대한 선내 표시, 적재 가능 기준을 초과하는 잠수 장비를 추가 적재하는 경우, 주의 사항의 철저한 안내, 중량물(수중레저장비)의 적절한 적재 방법
다이빙 목적 선박 사용 시 선박 검사	• 운항 실태를 반영한 확실한 선박 검사 실시, 격벽을 제거한 상태를 전제로 한 최대 탑승 인원 관련 조건 지정, 임시 검사 수검 의무

자료: 国土交通省, ガイドライン概要(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 일본 수중레저 안전사고 대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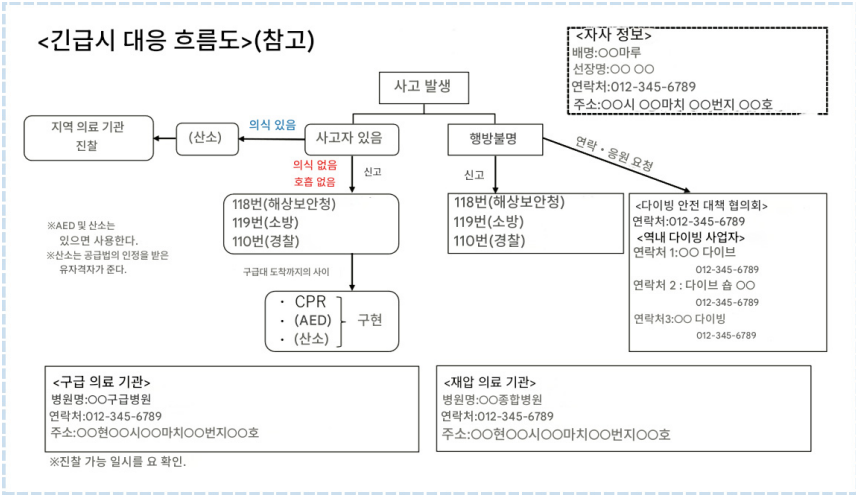

자료: 国土交通省, ダイビング船の安全対策ガイドライン, p. 6.(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2절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1.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황 분석

본 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한정해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한다. 다만 현재 수중레저 안전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해양경찰청 내부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자료의 생산 목적과 연구 목적 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세부적인 원인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해양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104건의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원인은 활동자의 부주의, 조석 미인지, 타인 부주의, 수영 미숙, 안전 미준수 등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수중레저활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70.2%로 가장 높다. 그러나 조석 미인지(2.9%), 안전 미준수(8.7%), 수영 미숙(5.8%) 등도 넓게 보면 수중레저활동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활동자의 부주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수중레저 안전사고의 비율은 87.6%에 달한다.[31]

31) 해양경찰청(2024.12).

〈그림 2-4〉 수중레저 안전사고 원인(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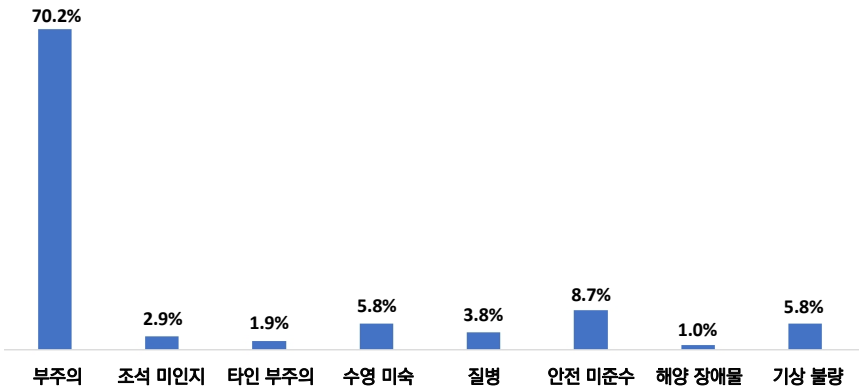

자료: 해양경찰청(2024.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에 한정해서 사고 발생 건수와 원인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야간에 발생한 수중레저 안전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중 9.6%를 차지한다. 이때 야간은 「수중레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시간으로 해석했으며, 안전사고 발생일자의 일출 및 일몰시각을 계산해 발생시각이 야간에 해당하는 안전사고만 집계하였다.[32]

〈표 2-5〉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사고건수(A)	3	2	2	1	2	10
사망자수(B)	3	2	2	0	2	9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 비율 (B/A)	100.0	100.0	100.0	0.0	100.0	90.0

자료: 해양경찰청(2024.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2) 특정일의 일출 및 일몰시각 계산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운영하는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를 활용함(천문우주지식정보, 생활천문관(검색일: 2026.2.6.))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는 2020년 3건이 발생해 가장 많은 사고 건수를 기록했으며, 이후 매년 약 2건씩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9명이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90.0%에 달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33] 또한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의 80.0%가 부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 미준수와 기상불량이 각 10.0%로 야간 안전사고 발생 원인은 주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인식 미흡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림 2-5〉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원인(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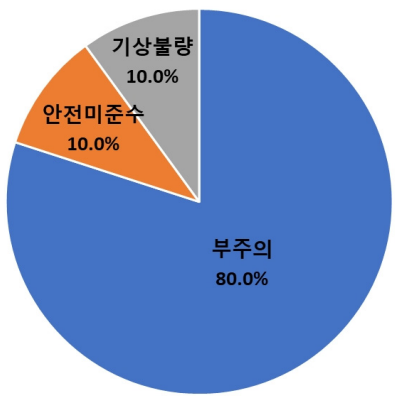

자료: 해양경찰청(2024.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3) 해양경찰청(2024.12).

2.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및 이슈 분석

1)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분석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분석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이다.

(1) 관련 법률 체계 및 개요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되었다. 즉,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활동인 수중레저활동의 이용관리와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4]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사업 등록 등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5]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수중레저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장과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중레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으로 구분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사업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6] 그리고 동법은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기구·장비와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34) 수중레저법 제1조, 제2조제2호
35) 수중레저법 개정(2025.4.22.)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그 동안 해양수산부소속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던 수중레저사업 등록, 안전관리 사무가 해양경찰청에 이관됨(202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검색일: 2026.2.7.))
36) 수중레저법 제2조제8호 및 제15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37] 다만,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동법은 국가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38]

〈표 2-6〉「수중레저법」의 주요 내용

구분	조문번호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 수중,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수중레저시설물, 수중레저사업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제4조~제6조	•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수중레저활동 관련 조사, 제조산업 육성, 표준 및 지침 작성, 어촌계와의 자발적 협약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및 활동 제한	제12조~제14조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야간 수중레저활동 제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수중레저사업	제15조~제25조	• 수중레저사업 등록·휴업·폐업, 수중레저사업자 준수의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편,「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었다.[39] 즉 동법은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캠프 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크고 작은 연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입법되었다.[40]

「연안사고예방법」 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안전문화시책 등으로 나누어 총 5개 장과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7) 수중레저법 제11조 및 제20조
38) 수중레저법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39) 연안사고예방법 제1조, 제2조제3호. 연안사고예방법은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차례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5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련 법령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됨(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연안사고예방법(검색일: 2026.2.7.))
40) 국가법령정보센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검색일: 2026.2.24.)

즉, 동법은 정의규정에서 연안체험활동을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으로 정의하며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수중형 체험활동이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을 의미하며, 체험활동 과정의 일부가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활동 내용의 주된 부분이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은 전체를 수중형 체험활동으로 본다.[41] 이러한 수중형 체험활동으로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씨워킹, 잠수교육, 잠수체험 등이 있다.[42] 즉, 「수중레저법」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과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 체험활동은 거의 동일한 활동을 의미한다.

〈표 2-7〉 「연안사고예방법」의 주요 내용

구분	조문번호	주요 내용
정의	제2조	• 연안해역, 연안사고, 연안체험활동
연안사고 예방	제5조~제7조	•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시행,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연안사고 안전관리	제9조~제11조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출입통제,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연안체험활동 신고 및 보험, 안전점검	제12조~제15조	• 연안체험활동 신고, 보험 등 가입, 연안체험활동 제한,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특히 동법은 제3장에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연안체험활동의 유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활동 전 신고 의무,[43]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준수 의무,[44] 보험 등 가입 의무(법 제13조)[45]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수중형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5인 이상인 경우 활동 전 신고 및 신고

41)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42)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연안사고예방법(검색일: 2026.2.7.)
43)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44)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2항
45) 연안사고예방법 제13조

수리가 필수이며,[46] 동 법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및 자격요건,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림 2-6〉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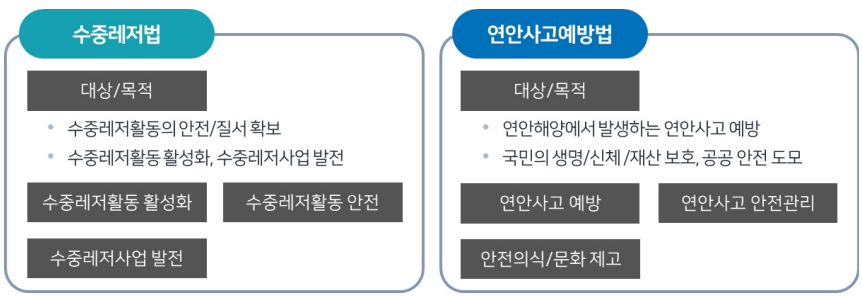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법률별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주요 내용

앞서 수중레저활동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예방법」의 체계와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과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야간 수중레저활동과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중레저법」 제13조는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시간 중 이루어지는 수중레저활동을 야간 수중레저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수중레저법」은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대상을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수중레저활동자)로 보아 수중레저사업자에게만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 요원이 배치된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사업자를 매

46)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제1조제3호,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의무는 사실상 수중레저사업자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는 제도적으로는 수중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집행되는 형태이다.

반면 「연안사고예방법」은 수중형 체험활동을 위한 연안체험활동 신고 시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간과 야간의 시간 구분이 아닌 기상조건, 환경오염, 해상여건 등이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등 환경 여건에 따라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47] 즉,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48] 다만 예외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일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49]

「수중레저법」은 야간에 수중레저활동을 하기 위하여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하위법령에도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통하여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50] 즉, 「수중레저법」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정의와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법령을 적용·집행하는 현장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범자들도 법령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47) 연안사고예방법 제14조, 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제7조
48)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제1항
49)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제1항제1호,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50)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그림 2-7〉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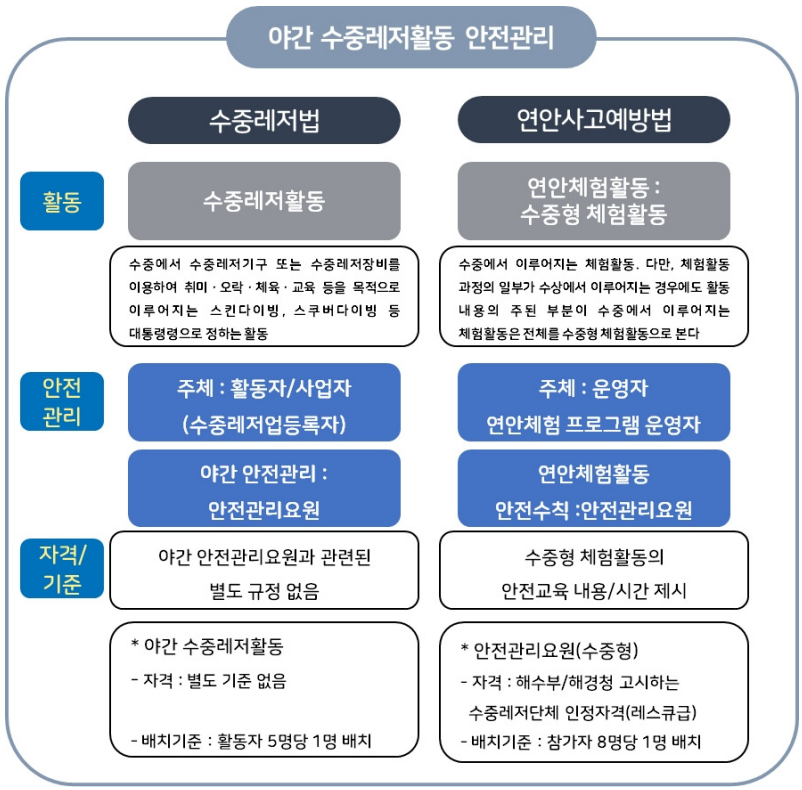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연안사고예방법」도 수중형 체험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자격 및 배치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고, 배치기준은 활동 시 반드시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두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8명 당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며, 비상구조선마다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1]

2)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주요 쟁점

앞서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률인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예방법」의 체계와 구성을 살펴보고, 각 법률의 야간 수중레저활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적 이슈를 ① 안전관리 주체와 ②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기준이라는 두 가지 쟁점으로 도출하였다.

(1) 안전관리 주체

「수중레저법」은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주체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로 보고 있으며, 수중레저사업자에게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사업자를 매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의무는 사실상 수중레저사업자를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의무는 법·제도적으로는 활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수중레저사업자를 중심으로 이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신고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연안사고예방법」은 주간과 야간의 수중형 체험활동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야간 수중형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르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역할과 의무가 분리되어 있으나, 명시적인 정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

51)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

다. 법령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안전관리요원은 운영자가 고용 또는 지정한 자로 참가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연안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및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야간 수중레저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의 안전관리 주체는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예방법」에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수중레저활동과 수중형 체험활동이 실제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유사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할 안전관리 주체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 인해 제도를 적용·집행하는 일선 현장 담당자뿐만 아니라 활동자를 비롯한 수범자 또한 법 적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일관적으로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2)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기준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예방법」은 모두 '안전관리요원'을 언급하고 있으나, 두 법 모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정의 규정은 부재하다. 「수중레저법」에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동행하라는 규정[52] 등 총 2개 조문에서 안전관리요원이 등장한다. 또한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언급하고,[53]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의무,[54] 연안체험활동 관련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요원의 신고 의무,[55] 안전관리요원의 보험 가입,[56]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항목 중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사항[57] 등 5개 사안에서 안전관리요원과 관련된

52) 수중레저법 제13조제1항,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및 제3호
53)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54)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의2,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의2
55) 연안사고예방법 제12조제7항
56) 연안사고예방법 제13조 및 제14조
57)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사항을 다루고 있을 뿐 안전관리요원의 개념을 규정하는 조문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연안사고예방법」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의 소관 부처인 해양경찰청은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을 실무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의 '레스큐급 이상'으로 설정해 법을 적용·집행하고 있다. 민간 수중레저 전문 교육단체의 '레스큐급 이상'이라는 기준은 「연안사고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양경찰청이 제작·배포하는 '연안체험활동 가이드북'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연안사고예방법」의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안전관리요원 자격 및 배치기준

구 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자 격	인명구조요원 또는 수상구조사 자격소지자	해수부장관·해경청장이 고시하는 수중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레스큐급 이상)	-
안전교육 이수	유형별 안전교육 이수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1명 이상 배치 (참가자 10명당 1명 추가)	1명 이상 배치 (참가자 8명당 1명 추가)	1명 이상 배치 (참가자 20명당 1명 추가)
참가자 수 대비 안전관리요원 수 (예시)	1~9명: 1명 배치 10~19명: 2명 배치 …	1~7명: 1명 배치 8~15명: 2명 배치 …	1~19명: 1명 배치 20~39명: 2명 배치 …

자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p. 13.(검색일: 2026.2.7.)

「수중레저법」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요원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활동자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다.[58] 그러나 「수중레저법」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 과정에서는 해양경찰청의 실무상 기준인 '레스큐급 이상'을 적용하고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고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가 총 51개소에 달하는데,[59] 각 단체별 '레스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명칭이 상이하고, 교육 내용 또한 차이가 커 각 단체의 '레스큐급 이상' 자격 간 역량 차이가 존재한다.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시야 확보의 제약과 바다라는 활동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활동 및 생명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장비가 요구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중레저법」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자와 「연안사고예방법」의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무상 통용되는 '레스큐급 이상'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이 현장에서 단속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일선 공무원을 비롯하여 수범자인 국민 입장에서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안전관리요원을 제도적으로 선별·배제하지 못할 경우,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실효성이 저하되고,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58) 수중레저법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동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단속 업무의 특성상 해양경찰청이 집행을 담당함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59) 2025년 12월 기준 해양수산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는 총 49개소이며, 2025년 1월 기준 해양경찰청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 단체는 총 34개소임.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이들 수중 관련 단체 중 중복 단체가 32개소임. 인정단체 현황은 부록 참조(2025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6호, 2025.7.4.);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자주묻는질문(검색일: 2026.2.7.))

제3절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주간 활동에 비해 위험도가 높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 정책적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개별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보다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제도정비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에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60] 본 규정은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장비 등 안전관리(제2조, 제3조), 수중레저시설물 기준(제5조), 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제10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규정 중 야간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하여 「수중레저법」 제13조와 본 법 시행규칙 제9조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하고 발광장비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배치 기준이나 장비 착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규정은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의 동행을 의무화하고,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여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기준을 구체화하였다.[61] 이와 같이 「수중레저 안전

60)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조

관리규정」은 「수중레저법」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문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보완하는 하위 규범으로 현장에서 법률을 적용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요구되는 안전관리요원의 정의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2-9〉 야간 수중레저 단속 사례와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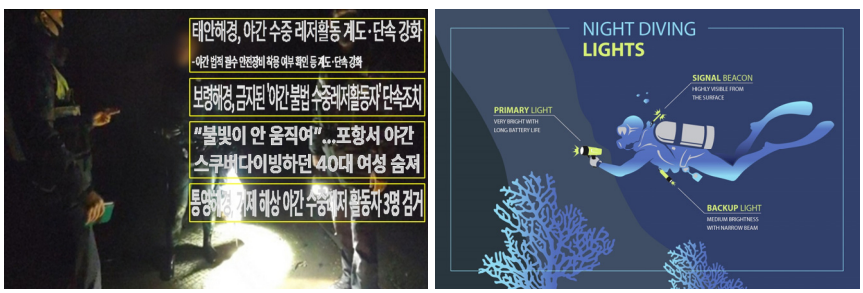

야간 수중레저활동 단속 사례 야간 수중레저 안전장비 가이드라인

자료: (좌) 프레시안(2020.6.17.), 매일일보(2020.6.7.), 한겨레(2025.12.8.), 한려투데이(2018.4.5.)(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우) Underwater Kinetics(검색일: 2026.2.7.)

해양수산부는 2022년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수중레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수중레저의 역사와 개념, 수중레저산업 현황, 수중레저 안전수칙, 수중레저사업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되며,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사고발생 신고, 수중레저활동 시간 제한, 야간 수중레저활동 요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해서는 야간에는 수중 시야 거리가 짧아 동반자 위치 파악, 장애물 식별, 독성생물 접촉 위험성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61)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존재하므로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동행하고 야간 안전장비 또한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함을 안내하였다. 또한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소지해야 하는 조명기구와 위치표시용 발광장비의 착용 위치와 밝기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또한 수중레저교육자 외에 수중레저 교육단체로부터 비상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시하고 있다.

〈표 2-8〉 동행입수 필요 안전관리요원 인원수 예시

단위: 명

구분	인원수				
야간 수중레저활동자* (안전관리요원 미포함)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명 이상
동행입수 필요 안전관리요원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당 1명 이상

주: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는 일반 활동자
자료: 해양수산부(2022a), p. 22.

2. 국외 사례 분석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중레저사업자나 수중레저교육 관련된 기준, 수중레저와 연계한 다이빙선박, 공기통 등의 안전관리 규정들은 선박 또는 고압가스 법령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의 해양보호구역이나 해양공원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주의사항 등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마련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레저목적의 활동은 개인의 레저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에 따른 시설관리나 안전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는 바다를 둘러싼 어업활동을 포함한 해양공간 및 해양환경 여

건이 유사한 일본의 수중레저 관련 사례와 함께 세계 레크리에이셔널 스쿠버 교육협의회(WRSTC: The World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의 다이빙교육과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도록 한다.

1) 일본 스쿠버다이빙 안전사고와 안전관리

일본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수중레저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본 수중레저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이나 유럽의 수중레저 교육단체를 통해 마련되었다. 한편, 일본은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업계 현황, 이용자 추이, 홍보 등을 목적으로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연합회 성격인 'C-card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 정식 명칭은 '일반 사단법인 레저 다이빙 인정 카드 보급 협의회(Cカード協議会)'이며 1994년 설립된 이후 현재 14개 수중레저 교육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62]

C-card 협의회는 수중레저활동 인증서인 'Certification-Card(통칭 C카드)'의 발행과 관련된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수중레저 교육단체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5월 24일을 '스쿠버 다이빙의 날'로 지정하고 다이빙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C-card 협의회는 각 단체의 C-card 발행 현황을 종합해 발표하면서 업계 동향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여건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C-card 협의회에서 발행하는 남·여 엔트리 레벨(오픈워터)의 C-card 발행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초급자에 해당하는 엔트리 레벨의 규모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연간 4만 명 규모를 유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여 2024년 29,797명, 2025년에는 27,99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남성이 평균 57%, 여성이 43%로 남성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62) Cカード協議会, Cカード協議会とは(검색일: 2026.1.20.)

〈그림 2-10〉 일본 C-card 발행 규모(2018~2025, 남·여 엔트리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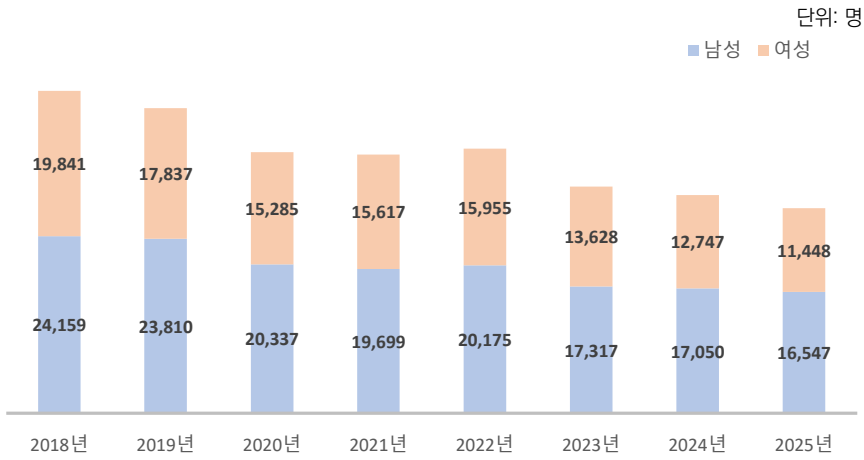

자료: Cカード協議会, 動向調査,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1.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와 함께 연령별 신규 수중레저활동자를 202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 43%, 30대 21%로 젊은층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1〉 일본 엔트리 레벨 C-card 발행 연령 분포(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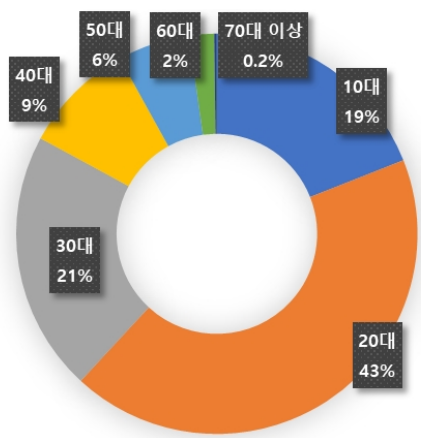

자료: Cカード協議会, 動向調査, 2025年認定動向調査結果(검색일: 2026.1.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C-card 협의회의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일본은 연간 3만 명 정도가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동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12〉 일본 해난사고자 수(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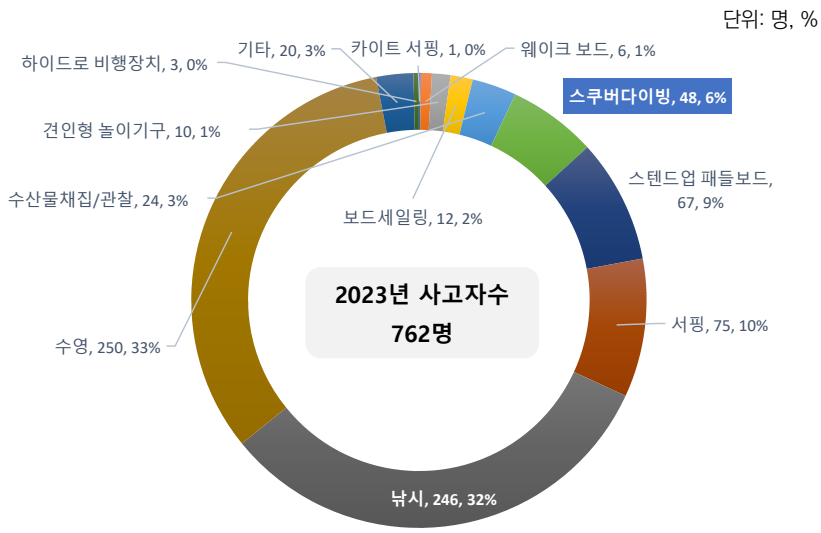

자료: 海上保安庁, p. 39(검색일: 2026.1.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본 수중레저활동자 동향과 관련하여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을 포함한 해난사고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난사고자 수를 살펴보면, 2023년 해난사고자 수는 총 762명이며, 이 중 스쿠버다이빙 활동 중 사고자는 전체의 6%인 48명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고 동향을 세부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이 연간 40명 내외의 사고자 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망자는 2019년 14명에서 2021년 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3〉 일본 수중레저활동자 사고 동향(2019~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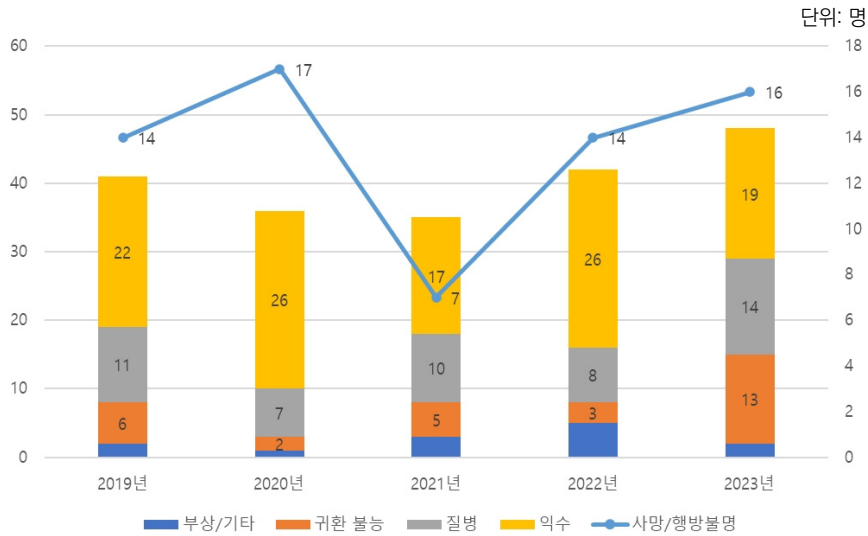

자료: 海上保安庁, p. 56(검색일: 2026.1.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일본에서는 해상보안청과 일본 C-card 협의회, 전문지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수중레저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고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C-card 협의회는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세이프티 가이드(安全なダイビングのためのセーフティガイド)'를 마련하고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와 응급처치, 수중레저장비 사용법, 등의 기본 규칙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QR코드 등을 활용한 '구급법 강습'을 추진하고 있다.[63] 다만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나 제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63) Cカード協議会, 認定ダイバーができること(검색일: 2026.1.20.)

〈그림 2-14〉 일본 안전한 다이빙을 위한 가이드 자료

자료: Cカード協議会, 認定ダイバーができること(검색일: 2026.1.20.)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세계 레크리에이셔널 스쿠버교육협의회 가이드라인

세계 레크리에이셔널 스쿠버교육협의회(WRSTC: The World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는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수중레저 교육 기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15〉 WRSTC의 구성과 주요 수중레저교육 기관

자료: WRSTC, WRSTC Member Councils(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WRSTC는 미국과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대륙별 RSTC(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의 총협의회이며, 대륙별 RSTC에는 각 국가에

등록된 수중레저 교육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WRSTC는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WRSTC가 제시하고 있는 주요 다이빙 표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각국의 주요 다이빙 교육단체에서는 이러한 표준을 활용하여 다이빙 관련 교육 및 상호 인증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표 2-9〉 WRSTC의 다이빙 기준 자료

제목	내용
Introductory Scuba Experience	스쿠버 다이빙 체험 최소 교육과정 기준
Supervised Diver	감독 하 다이버 최소 교육과정 기준
Open Water Diver	개방 수역 다이버 최소 교육과정 기준
Enriched Air Nitrox Certification	나이트록스(익스트림 에어) 최소 교육과정 기준
Entry level Rescue Diver	**구조 다이버 최소 교육과정 기준**
Recreational Dive Supervisor	다이브 슈퍼바이저 최소 교육과정 기준
Recreational Assistant Instructor	보조 강사 최소 교육과정 기준
Recreational Scuba Instructor	스쿠버 강사 최소 교육과정 기준
Recreational Scuba Instructor Trainer	강사 트레이너 최소 교육과정 기준
Common Hand Signals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신호 사진
Medical Guidelines	의료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Recreational Diving with Diabetes	–
RSTC Brochure	–
WRSTC Operating Protocols	–
WRSTC Regional Council Application	–
WRSTC Conditions for Regional Councils	–

자료: WRSTC, DIVE STANDARDS(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WRSTC의 다이빙 기준(Dive Standards) 자료에서 보듯이 체험형 다이빙에서 오픈워터, 강사에 이르기까지의 최소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어 개

별 단체에서는 이를 각 단체의 교육표준과 연계하여 교육 단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해서는 '구조 다이버 최소 교육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국내 야간 안전관리요원의 교육과 연계하면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 내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RSTC의 '구조 다이버 최소 교육과정 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조 다이버 자격에 필요한 취득 요건과 함께 교육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2-10〉 WRSTC의 '구조 다이버 최소 교육과정 기준' 내용

구분	최소 교육 내용
EFFECTIV 1 February 20(RSTC RECREATIONAL SCUBA TRAINING COUNCIL MINIMUM COURSE CONTENT FOR Entry-Level Rescue Diver Certification As Approved By IDEA PADI PDIC SCUBA DIVING INTERNATIONAL SSI SCUBA SCHOOLS INTERNATIONAL	• 개요 : 자격증 취득 요건, 교육 과정 요건 • 스트레스 및 다이빙 응급 상황의 일반적인 원인 • 다이빙 응급 상황 또는 도움이 필요한 다이버 식별(수상 및 수중 모두) • 다이빙 구조 절차 및 부상 치료 • 응급 처치 용품 및 다이빙 구조 장비 • 다이빙 응급 상황 관리 • 구조자의 건강 및 안전 • 개방 수역 스쿠버 구조 기술

자료: WRSTC, Minimum Course Content For Entry-Level Rescue Diver Certification(검색일: 2026. 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내 수중레저 교육단체에서도 구조 또는 레스큐 다이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전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직무능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위의 자료에서 제시하는 교육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시사점

국내 수중레저활동은 수중레저와 관련된 국제단체나 국내 수중 또는 수상에서의 레저 또는 구조와 관련된 단체들이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일정 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를 통해 보급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스킨스쿠버를 포함한 수중에서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보급하고 수중레저활동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한 선박을 규정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에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 기준, 사업 등록을 포함한 「수중레저법」이 제정되어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확보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중레저법」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연안지역에서의 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연안사고예방법」에서는 수중형 체험활동의 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레스큐급'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중레저법」에서는 '수중레저사업자(수중레저업 등록자)'를 통한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활동자 5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연안사고예방법」에서는 '연안체험프로그램 운영자'라는 표현과 함께 주간과 야간의 구분 없이 참가자 8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요건이나 역량과 더불어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수중레저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은

사항은 법률에 따른 규정보다는 수중레저 관련 교육단체나 협회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공기통 또는 수중레저활동 공간(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기타 관리구역 등)을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중레저를 관리하는 협회에서는 수중레저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한 수중레저 활동의 육성을 위해 수중레저 관련 교육단체들의 연합회 또는 총회를 구성하고 수중레저 관련 통계의 생산, 안전관리 및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어 국내 실정과는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중레저 교육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수중레저와 관련된 교육단체들과 공유하면서 각 단체의 교육체계를 표준화하고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상호 인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중레저법」에 따른 야간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이나 요건과 관련해서는 「수중레저법」에서 고시하고 있는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교육 단계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를 통해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타 법령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03
수중레저 안전관리 실태 및 한계점 분석

제1절 수중레저 교육단체와 교육체계

수중레저는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활동 공간, 활동 목적, 기술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레저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가장 큰 구분 방법은 호흡 방식과 관련된 장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즉, 수중 무호흡 또는 수면에서의 호흡을 중심으로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과 공기통을 포함한 호흡장비를 사용하는 스쿠버다이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64] 이러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안전교육 및 장비 활용 교육 등을 이수할 때 수중에서의 레저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산업 및 군사적 목적에서 진행되던 수중공간에서의 스쿠버다이빙 활동이 레저 활동으로 확대된 것은 1950년대 이후부터이며 수중레저를 위한 기초교육과 안전을 위한 인증 체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유럽, 미국 등에서 만들어지면서 점차 대중화되었다.

국내에서도 수중레저와 관련된 국제단체나 국내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직

64)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을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으로 구분함

되고 수중레저를 위한 교육체계가 마련되면서 레저활동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국내 수중레저활동은 레저활동을 위한 해상 운송수단 확보와 안전관리 등이 제약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선박의 정비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교육 기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수중레저법」이 제정되었다. 2017년 「수중레저법」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관련 교육단체마다 각각 시행하고 있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교육 표준'을 마련하였다.[65]

〈그림 3-1〉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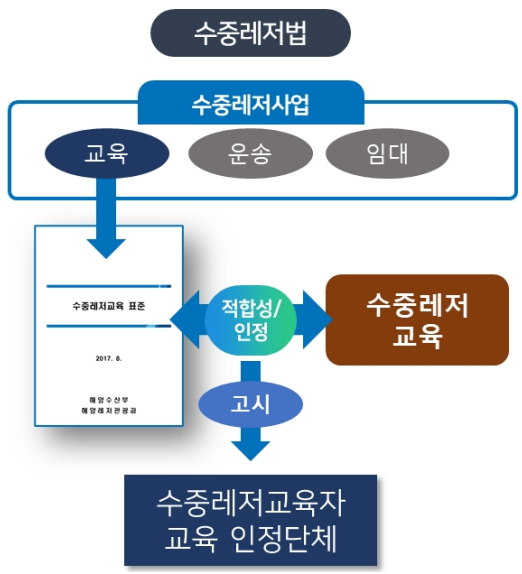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65) 수중레저법 제5조

'수중레저교육 표준'이 마련됨에 따라 「수중레저법」 시행 전에 단순 체험에서 강사 양성에 이르기까지의 자체적인 수중레저 자격 교육을 수행했던 국내외 단체들은 '수중레저교육 표준'에 규정된 교육 단계에 따라 각 단체별 교육 매뉴얼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게 되면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 고시된다. 해양수산부의 '수중레저교육 표준'은 다음 그림과 같이 4가지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교육환경과 이론교육, 실습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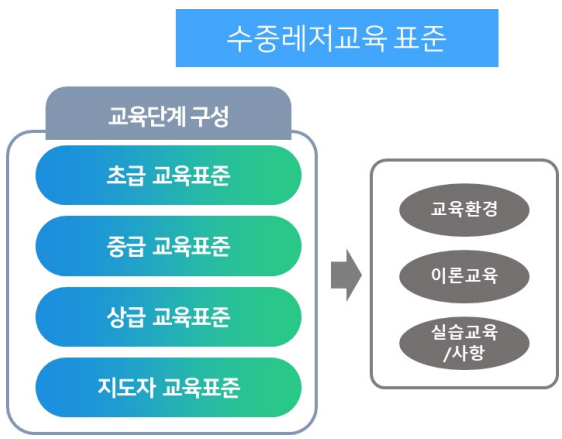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2017a)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초급 교육표준에 포함된 이론교육은 수중레저를 처음 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중레저장비의 이용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안전사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습교육은 다이빙 풀 등을 포함한 제한 수역에서의 실습과 바다 등 개방 수역에서의 실습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오픈워터 스쿠버다이버' 또는 '오픈워터 다이버', '오션 다이버', '원스타 다이버' 등과 같은 수준의 교육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단체는 자체 교육과정을 '수중레저교육 표

준'과 비교하여 상호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정단체 지정을 신청한다. 2025년 말 현재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는 다음 표와 같이 총 49개 단체이다.

〈표 3-1〉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

구분	단체명
2017	세계스킨스쿠버연맹, (사)대한잠수협회, SDD International / RAID, PSAI KOREA, NAPD, NASDS KOREA, ANDI International KOREA, IANTD, NDL KOREA,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SSI KOREA, BSAC KOREA, (사)한국산업잠수협회, SDI.TDI.ERDI, NAUI, UTR KOREA, NASE KOREA, UTD KOREA, IDIC, IDEA-ASIA, PDIC-SEI ASIA, SNSI KOREA(국제잠수안전협회), YMCA SCUBA(서울 YMCA),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KPSDA((사)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 PADI,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AFIA, ACUC, 국제잠수교육협회(ISEA), (사)대한안전연합, ㈜산업잠수협동조합
2019	AIDA KOREA
2020	(사)한국레저안전협회, PTRD KOREA
2022	Global Underwater Explorers, PSA, ASTD(에이에스티디), 유티에이(UTA)
2023	에이피디아이(APDI), PSS(한국지사), (사)한국스포츠레저교육협회, 한국프리다이빙협회(KFA)
2024	공공재난안전구조협회, 아일렉(ILEC), 국제 다이빙 협회(IDA), MFI
2025	몰차노브 코리아(Molchanovs Korea),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자료: 해양수산부(2025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6호, 2025.7.4.)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7년 「수중레저법」 시행과 함께 지정된 단체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첫해였던 2017년 37개 단체가 고시된 후, 매년 2~4개 단체가 새롭게 지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프리다이빙을 교육하는 단체의 지정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3-3〉 연도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 동향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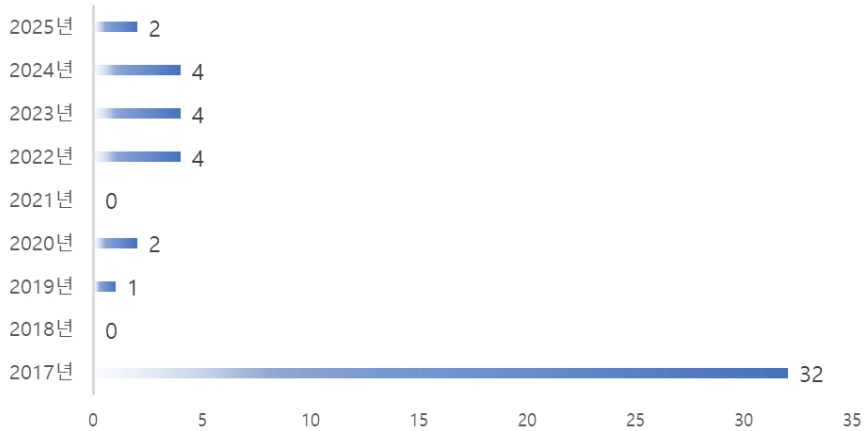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66]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련 기준의 마련을 위해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의 '수중레저교육 표준'과 연계한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였다.[67] 이와 함께 각 단체의 교육체계에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68] 한편, 단체별로 부여되는 교육체계의 명칭이나 단계별 교육과정이 각기 다르게 운용됨에 따라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다.

66)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야간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야간 수중레저)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 동행 필요

67) 해양수산부는 야간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 및 인정단체 기준에 대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2025.7.31.)하였으며 16개 단체가 참석함(해양수산부(2025.8.6.))

68) 부록 2 참조

제2절 수중레저 안전관리 한계와 개선 과제 분석

1. 조사 개요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더불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의견조사는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이하 수중레저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25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수중레저 교육단체는 49개소이며 각 기관은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교육 매뉴얼을 통해 수중레저활동자와 강사 등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수중레저 교육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과정 메뉴얼을 토대로 안전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정 및 요건 등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시행에 앞서 설문 문항과 조사 대상은 수중레저 교육단체 관계자 및 수중레저 관련 연구자 등과 사전 논의를 통해 다음 표와 같이 진행하였다.

〈표 3-2〉 수중레저 교육단체 의견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대상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49개(응답단체 30개)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e-mail, 모바일), 전화조사 보완	
조사 기간	2026년 1월 12일 ~ 1월 30일	
조사 항목	기관 운영 현황	• 기관 성격 • 인정단체 지정 연도 • 기관 운영 동향
	수중레저 교육/안전관리요원	• 교육과정 분류 • 안전관리요원 교육과정 • 안전관리요원 요건
	수중레저정책 개선	• 수중레저시장 동향 • 수중레저활성화 지원사항 • 수중레저활성화 지원사업

자료: 저자 작성

2. 결과 분석

1)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운영 환경

수중레저활동은 1950년대 이후 수중레저에 필요한 교육이나 인증을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차 대중화되었다. 국내에서도 수중레저 관련 협회나 단체들의 창립과 함께 수중레저가 점차 일반인에게 보급되고 있다. 수중레저 교육단체 운영 여건과 관련하여 기관의 성격을 국내 자생과 해외 유입 단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기관 중 33%는 국내 자생 단체로 분석되었으며 67%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자번호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 단체의 90%가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즉, 수중레저 특성상 해외에서 조직된 수중레저 교육 또는 인증단체들과 연계한 국내 지부 성격을 가진 단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수중레저 교육단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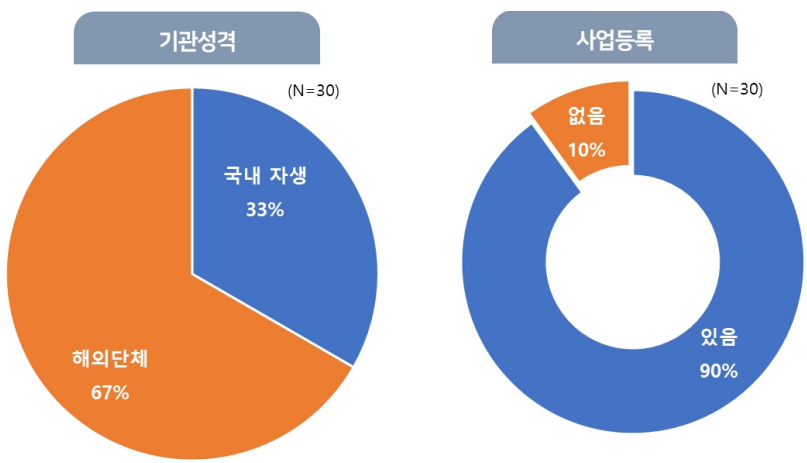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수중레저 교육단체들의 국내 설립 연도를 2000년대 이전과 함께 이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 조직된 단체가 13% 정도이며 2000~2009년에 설립된 단체가 20%, 2010~2019년 사이에 설립된 단체가 40%로 2017년 「수중레저법」 시행 전후 설립된 단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한편, 수중레저 교육단체 중 국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해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단체도 14%(4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5〉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국내 설립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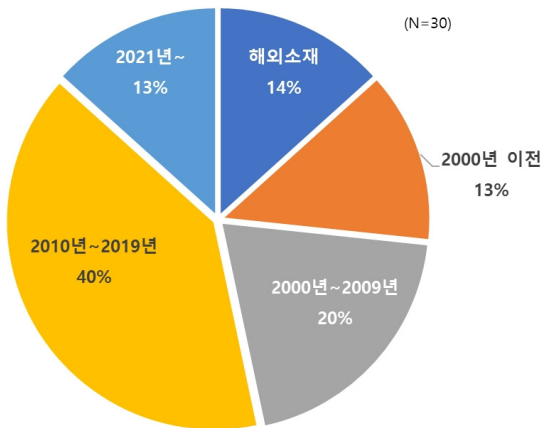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수중레저법」에서 제시하는 신고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동향 파악과 더불어 단체의 운영 여건을 적기에 파악하는 과정이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5개 수중레저 교육단체가 변경 항목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주요 변경 사항은 교육 강사 수, 교육시설 운영 규모, 교육 운영계획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교육단체는 고시 이후 별다른 변경 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6〉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현황 변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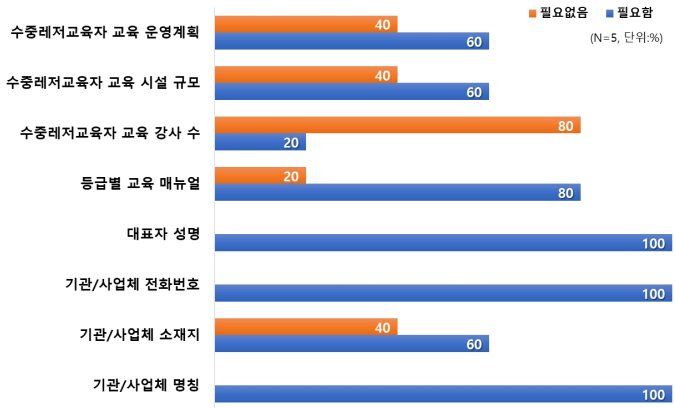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수중레저법」에 따른 일반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항목 정비 또는 변경 절차 개선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일반사항의 신고 필요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림 3-7〉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현황 변경신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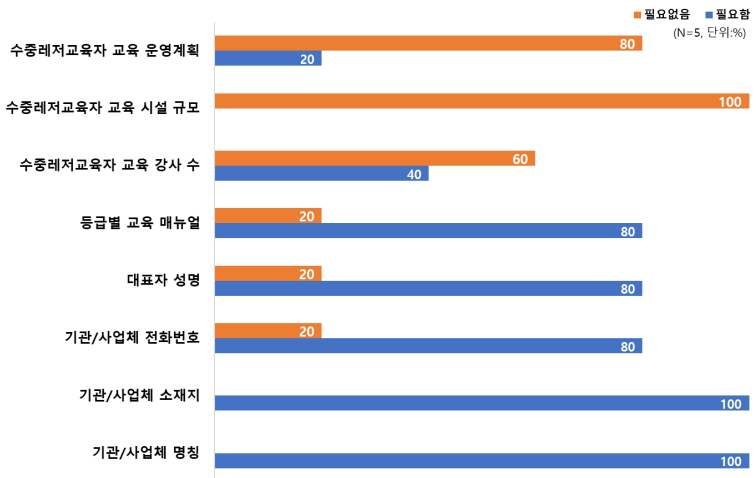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변경 신고 항목의 신고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의 수중레저 교육단체는 8개 신고 항목에 대하여 신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5개 인정단체에서는 교육시설 운영 규모, 교육 운영 계획에 대한 신고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업자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은 단체의 주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신고 필요성과 연계하여 변경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인을 살펴본 결과, 변경 신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54%로 나타났으며, 신청 서류와 절차 등이 복잡하다는 의견과 변경 신청 자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응답이 13%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변경 신청 절차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20%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수중레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현황의 변경 신청은 법적 사항으로, 이에 대한 주기적 홍보와 더불어 관련 제도의 체계적 시행을 통해서 행정 사항을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현황 변경 절차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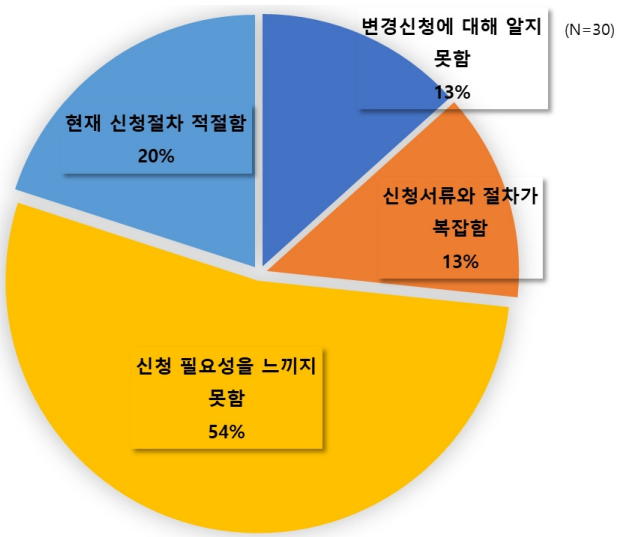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 도입 방향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관련된 요건 및 역량 파악을 위한 의견조사는 각 수중레저 교육단체가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과 더불어 해양수산부 '수중레저교육 표준'과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안전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교육단체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안전관리요원의 요건을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은 각 단체의 교육과정과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연계성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예시로, 각 단체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별 명칭과 안전관리요원의 등급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림 3-9〉 수중레저 교육단체 교육과정 분류체계 예시

구분:단계분류예시		귀단체의 교육과정 단계분류(명칭 포함)	해양수산부 교육표준분류기준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	해당없음
일회성 체험	Try	체험다이버	○				
초급	Open Water	오픈 워터	○				
↕	Advanced OW	중급1		○			
	〃	중급2		○			
	〃	상급1			○		
	Dive master	상급2			○		
최상위 (지도자)	Instructor	지도자				○	
기타							
※ 예시 분류를 토대로 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추가 가능합니다.							

자료: 저자 작성

국내 수중레저 교육단체들은 앞서 기관 성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외단체 또는 해외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단체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각 단체에서 제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 또한 외래어의 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초급이나 중급, 상급, 지도자 등에 따른 분류 체계는 있으나 해당 등급 내에서도 별도의 세부 과정을 운영하면서 기관마다 명칭에 차이가 매우 크다.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과정은 〈그림 3-10〉과 같으며 1회성 체험다이버를 제외하면 초급에서 지도자까지 일반적으로는 오픈워터, 어드밴스, 다이브마스터, 강사의 명칭을 가지고 있고 유사 명칭으로 영문을 사용하거나 축약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급 이상에서는 세부 분류 기준을 통해 '레벨 1', '레벨 2'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육과정을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체계는 오픈워터 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다이빙 횟수나 시간 등 숙련도와 더불어 스페셜티로 불리는 별도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따라 구분된다.

〈그림 3-10〉 수중레저 교육단체 교육과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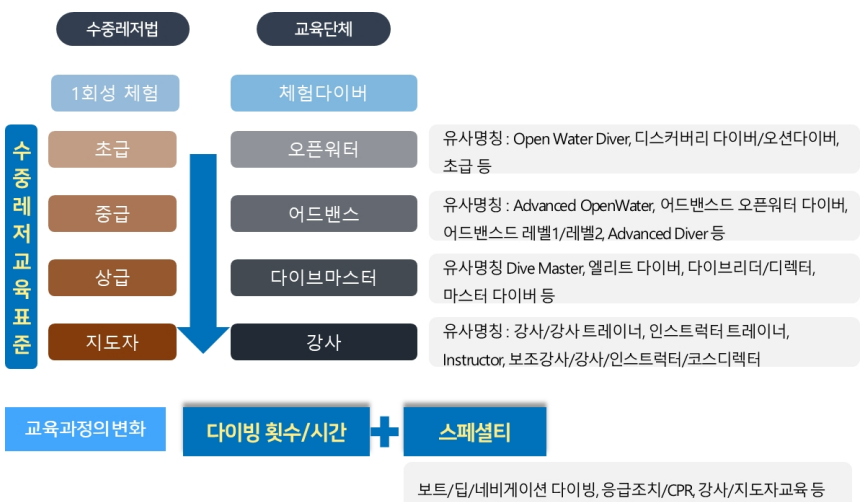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이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4개의 교육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떠한 교육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교육단체별로 '레스큐 다이버' 또

는 '구조 다이버'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사 단계에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위한 응급처치, CPR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단계와 안전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역량을 살펴보았다.

〈표 3-3〉 안전관리요원의 교육 단계와 교육 과정

구분		주요 내용
최소 요건/단계		상급(Rescue Diver 이수)
주요 교육 내용 및 역량	• 사고 예방 + 발생 후 대응 역량	• 안전관리요원은 사고가 나지 않게 관리하는 역할과 사고 발생 시 즉각적 구조·응급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특수성	• 야간은 시야·방향 상실·장비 의존도가 높아 Night Diving + Rescue 교육 병행이 필요
	• 리더십·인원통제 능력	• 안전관리요원은 개인 안전을 넘어 다수 인원 통제·팀 리딩·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경험 기반 인력	• 매뉴얼보다 다양한 상황 경험을 통해 위기 대응 판단력을 갖춘 인력이 적합
	• 응급처치 자격	• CPR, AED, 산소공급(O_2) 등 의학적 응급대응 능력은 필수 소양
	• 장비 이해·운용 능력	• 구조·안전은 장비 숙련도와 직결되며, 탈착·수리·특수장비 운용 교육이 필요

자료: 저자 작성

조사 결과, 수중레저 교육단체는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상급/마스터 수준의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부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경우 '레스큐 다이버'가 상급 과정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 단체는 중급 과정 안에 별도의 안전과 구조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레스큐 다이버'로 인정하고 있어 상급/마스터 수준이라고 표현하였다. 한편, 교육단체 중에서는 야간 안전관리요원이라면 단순 자격 외에 야간이나 특수환경에서의 수중레저활동 경험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상급 이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단체도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은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따른 사고 대응 책임자의 역할

을 수행해야 하므로 구조·응급 대응 역량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수중레저법」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정의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중레저교육 표준' 등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이빙 선박을 이용하는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사항으로는 「연안사고예방법」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 신고 체계 등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요원의 구조장비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조,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3-11〉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지원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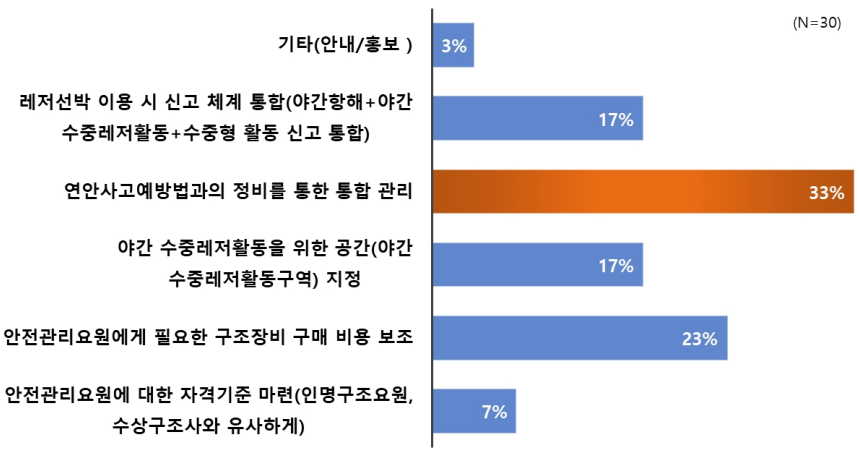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수중레저 활성화 지원 방안

「수중레저법」은 시행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수중레저사업체 현황이나 활동자 규모, 안전사고 통계 등 동향이나 규제 발굴,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중레저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필요성을 살펴보면, 수중레저 관련 규제 개선 수요의 주기적 조사와 안전사고 현황 등의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비교적 높게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수중레저 포인트 현황, 수중레저활동 행태에 대한 주기적 조사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수중레저활동자 규모, 사업체 경영 현황과 관련된 항목은 조사 및 수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각 단체는 운영 활성화와 연계된 정보 수요는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업체 동향이나 활동자 규모(C-card 발급) 등 사업체의 영업 실적과 관련된 고유정보 공유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중레저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수중레저활동자 규모 파악 등 기초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기초 현황과 관련된 항목의 체계적 조사와 업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2〉 수중레저시장 동향 파악 기초 자료

자료: 저자 작성

국내 수중레저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주와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사업체 등록이 증가하였으며, 프리다이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활동 행태가 다양화되었다. 수중레저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3-13〉 국내 수중레저시장 전망(향후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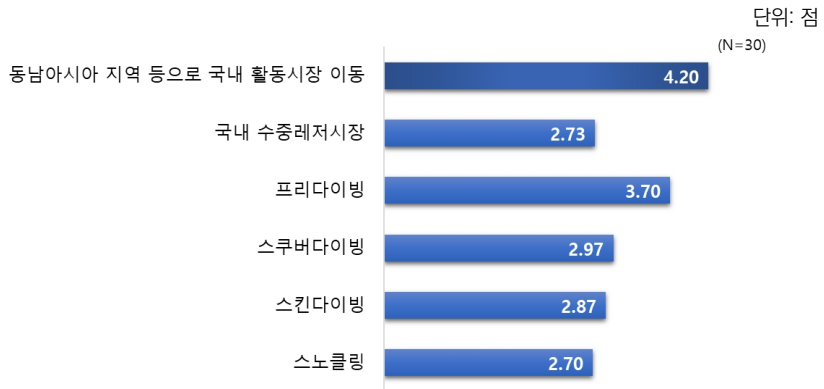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응답자들은 동남아 시장으로의 이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프리다이빙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스킨다이빙과 스쿠버다이빙 등 국내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내 수중레저 관광상품 개발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 시설 조성, 규제 개선 등 국내 수중레저 환경에 적합한 발전모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수중레저시장의 전망과 연계하여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과 시급한 사항을 16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1순위부터 5순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중요성 기준 1순위는 어촌지역 주민과의 마찰 및 갈등 해소,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14〉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1순위, 1~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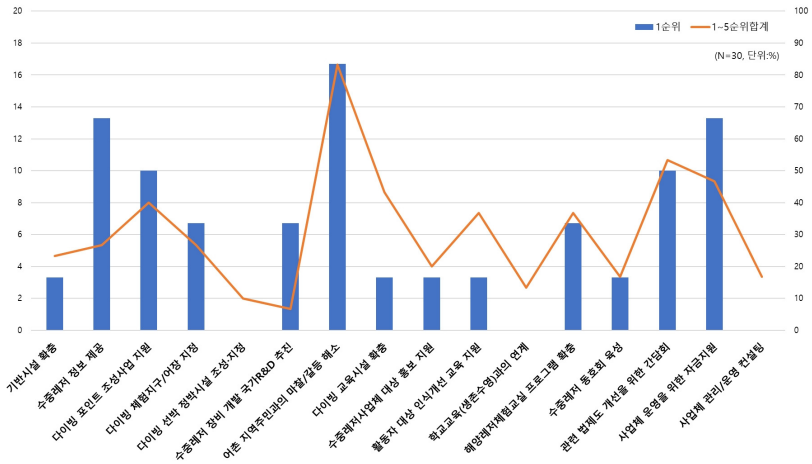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리고 시급성 기준 1순위는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15〉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1순위, 1~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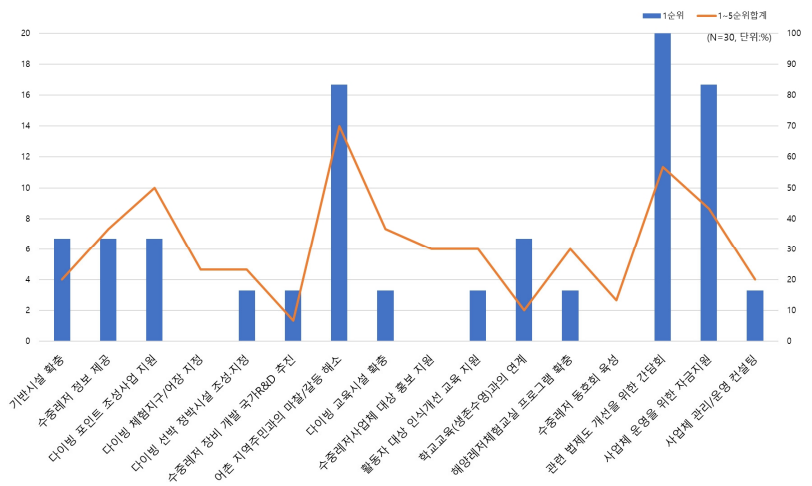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국내 수중레저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상호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중요성 및 시급성)

중요성	순위	시급성
어촌지역 주민과의 마찰/갈등 해소	1순위	어촌지역 주민과의 마찰/갈등 해소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2순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3순위	다이빙 포인트 조성 사업 지원
다이빙 교육시설 확충	4순위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다이빙 포인트 조성 사업 지원	5순위	수중레저 정보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수중레저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중요성과 시급성의 1, 2순위가 어촌지역 주민과의 마찰 및 갈등 해소와 더불어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요성 기준으로는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다이빙 교육시설 확충, 다이빙 포인트 조성 사업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급성 기준으로는 다이빙 포인트 조성 사업 지원과 함께 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수중레저 정보 제공 등으로 분석되었다.

수중레저와 관련된 마찰 및 갈등 해소, 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간담회와 연계하여 현재 사업체가 겪고 있는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조사 대상 16개 항목에 대하여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제약요인은 해양 환경의 계절성과 지역 어업인의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중레저활동과 연계한 법·제도적 규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볼거리와 활동공간, 시설의 부족 등이 제약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중레저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성·시급성 항목과 더불어 수중레저사업

을 제약하는 요인 등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수중레저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여 수중레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된다.

〈그림 3-16〉 수중레저사업 제약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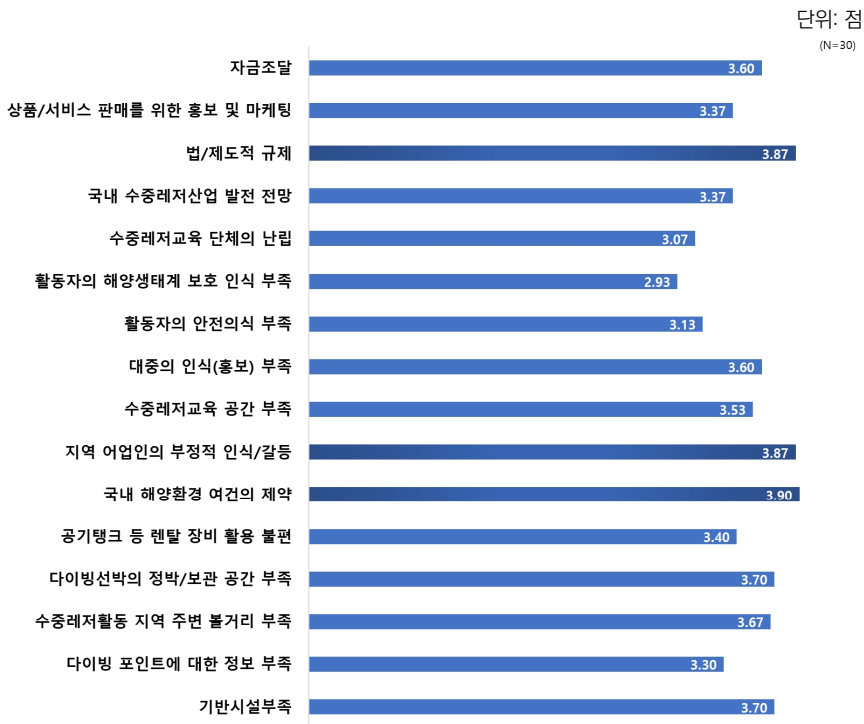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이와 더불어 수산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관리,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홍보와 기반 시설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수중레저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주기적 소통 기회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제3절 종합 분석

국내 수중레저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는 각 단체의 기초 현황 및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의 확보와 연계한 각 단체의 교육체계, 안전관리요원이 갖춰야 하는 자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국내 운영 여건과 관련해서는 2017년 「수중레저법」 시행 이후 49개 단체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 고시되었으며, 각 단체는 해양수산부의 '수중레저교육 표준'과 연계한 교육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수중레저 교육단체가 해외에서 유입되어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과정별 용어와 세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차이가 존재한다.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일반현황 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육단체는 최초 신고 이후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중레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경 신고에 대한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 신고와 관련된 제도 및 행정절차는 이에 대한 안내·홍보 및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의 현행화와 더불어 제도의 집행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각 수중레저 교육단체마다 안전관리요원에 해당하는 명확한 자격 기준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4단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각 단체에 따라 '레스큐 다이버' 또는 '구조 다이버' 과정이 상급에 해당하는 다이브마스터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강사 단계에는 응급처치와 CPR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수중레저 교육단체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는 안전사고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야간의 저시정, 조류환경 등 해양 환경에 익숙해야 하기 때문에 상급 이상의 마스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야간 수중레저활동은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교육체계에 따른 자격 외에도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7〉 수중레저 안전관리요원 기준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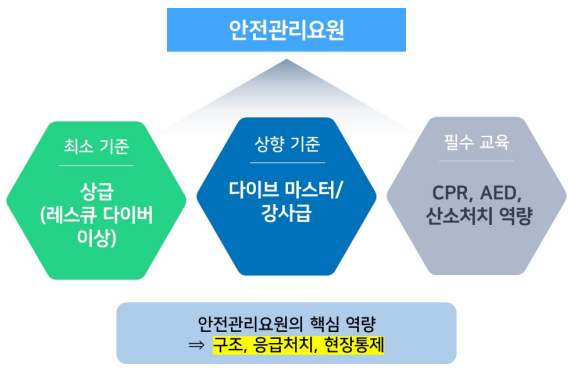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국내 수중레저시장의 발전과 연계한 수중레저의 제약요인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 과제를 살펴보면, 수중레저 교육단체는 수중레저활동 공간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법·제도적 규제를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 기회 마련과 더불어 규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산업체와 정부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다이빙 포인트의 조성과 홍보, 수중레저 교육시설 확충, 수중레저에 대한 홍보 사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중레저시장의 발전 및 안전과 관련된 이슈의 해소를 위해서는 수중레저 교육단체를 포함한 산업계와의 주기적 의견 수렴과 「수중레저법」 제6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을 활용한 사업모델의 마련을 통해 지역 어업인과의 상생 방안이 모색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중레저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수중레저 영역에 대한 체험 기회 확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5〉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체계 분류(1)

기관명	체험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
RAID	체험/ 트라이 다이버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다이브 마스터/ 마스터 레스큐**	강사
PSAI KOREA	-	Open Water Diver	Advanced OpenWater	Dive Master	Instructor
NAPD	-	오픈워터	Advanced	**마스터/ 레스큐**	강사 (다이빙 전반교육)
NASDS KOREA	-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레스큐 다이버**	강사/트레이너
IANTD KOREA	트라이 스쿠버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강사/ 강사교육관
NDL Korea	테스트 다이버	confined waterdiv, 노비스 다이버	어드밴스드 PBD	다이브 마스터	강사 랭크1/2/3
(사)한국수중 환경안전협회	체험 다이버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응급처치/ CPR**	강사/트레이너
bsac korea	체험 다이버	오션다이버	어드밴스드 다이버	다이브 리더	Instructor
(사)한국산업 잠수협회	-	초급	중급	상급	강사
NAUI	체험 다이빙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버	**어드밴스 오픈워터 스쿠버 다이버, 레스큐**	**다이브 마스터**	강사
UTR KOREA	-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레스큐, 마스터**	강사
UTD Korea	체험 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강사
PDIC-SEI ASIA	-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다이버	마스터 다이버	인스트럭터
대한수중 핀수영협회	체험 다이버	주니어 다이버 , 오픈워터	2스타 (어드밴스드)	마스터	강사/ 트레이너

자료: 저자 작성

〈표 3-6〉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체계 분류(2)

기관명	체험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
AFIA	체험 다이버	프리다이버	어드밴스 프리다이버	마스터 프리다이버	지도자
대한안전연합	주니어 다이버	오픈워터 프리다이버/ 다이버	**어드밴스 프리다이버/ 다이버, 레스큐**	**마스터 프리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강사/트레이너
㈜산업잠수 협동조합	트라이 다이버	오픈워터 다이버	ADVANCED OWD	**마스터 다이브, Rescue, F/A CPR**	Dive Master
PTRD KOREA (피티알디코리아)	인트로 다이버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다이버	**다이버 마스트, 레스큐 다이버 / 구조 다이버**	강사/트레이너
GUE	디스커버 다이빙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마스트	강사
astd	체험 다이버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 오픈워터 다이버	다이버 마스트	스포츠 다이버 강사
PSS	체험 다이빙	Open Water Diver	Advanced Diver, Rescue Diver(중급상)	Dive Master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한국스포츠 레저교육협회	-	오픈워터	어드밴스	마스터	강사다이버/ 인스트럭터
공공재난안전 구조협회	주니어 다이버	오픈워터	어드밴스드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다이버 마스트**	강사/지도자
아일렉 (ILEC)	-	Open Water Diver	ADVANCED OWD	DIVE MASTER	INSTRUCTOR
한국해양 소년단연맹	주니어 다이버	오픈워터 다이버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	마스터 다이버/리더 다이버	인스트럭터 트레이너

자료: 저자 작성

04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1절 법·제도 개선방안

1.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개선

1) 한계 및 문제점

「수중레저법」은 원칙적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야간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허용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69] 다만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가 "①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②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는 제외), ③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이라는 요건을 따른 경우에는 야간 수중레저활동이 가능하다.[70]

69) 수중레저법 제13조제1항

특히 위 「수중레저법」에 근거한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은 야간 수중레저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하고,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71]

〈표 4-1〉 안전관리요원 관련 수중레저법령 주요 내용 및 한계점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수중레저법	제13조 (수중레저활동 제한)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 금지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 (야간안전관리)	• "①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②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③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요건을 따른 경우 가능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야간 수중레저)	•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함 •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함
⮟		
한계 및 문제점		• 법령에서 안전관리요원의 개념과 자격기준 내용이 부재 • 실무적으로 '수중레저교육 표준'이라는 내부 문서를 참고하여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동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부터 강사 자격 취득 또는 비상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자격을 이수한 자로 안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러한 「수중레저법」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민간단체 자격증과 교육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범자인 일반 국민과 집행자인 정부 모두에게 법령 적용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72] 즉,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법」의 입법 미비

70)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제3호
71)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로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동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부터 강사 자격 취득 또는 비상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자격을 이수한 자로 안내하고 있다.[73]

2) 법리적 검토

법률은 기본권의 제한과 행위 금지의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레스큐(Rescue) 과정, CPR 포함 여부 등 기술적·전문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자격 기준을 「수중레저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경우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AUI, PADI 등 교육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기준은 국제 기준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상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 고시"의 이원적 구조로 규율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에 관한 기본적인 틀은 시행령보다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시행령은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 형식으로서 정책적·구조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시행규칙은 기술적·집행적 기준에 관한 상세 사항을 설정하는 하위법령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은 장비 요건 등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집행적 관점에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보다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현행 「수중레저법」 제7조에서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72) 장유락(2025), p. 167.
73)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검색일: 2026.2.7.)

3) 개정안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시행규칙 제9조제2호는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으로 규정하여 수중레저교육자를 안전관리요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요원의 개념과 범위, 종류, 자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교육자에 대해 제2조제10호 및 제11조제4항, 동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장의 설문조사와 자문의회 결과 분석에 따르면,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4단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각 단체에 따라 ‘레스큐 다이버’ 또는 ‘구조 다이버’ 과정이 상급에 해당하는 다이브마스터에 포함되어 있으며, 최상급인 지도자/강사 단계에는 응급처치와 CPR 과정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야간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동행 요건에 있어서 어느 단계까지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안전관리요원으로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관리요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상 적어도 레스큐 다이버 또는 구조 다이버 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 수준에 관해서도 동 고시에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시행규칙 제9조제2호 본문은 “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이라고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안전관리요원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안전관리요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① 상급과정 이상의 교육, ②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2〉 안전관리요원 자격 기준 개선 관련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시행규칙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법 제7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받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수중레저 안전관리 규정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신설〉 ② 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상급과정 이상의 교육** **2.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교육** ③ 규칙 제9조제3호의 발광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한 경우 발광 부분이 수면 상부에서 맨눈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2.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

1) 한계 및 문제점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사업 중 하나로 교육업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 등을 등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즉,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이라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74] 특히 사업자는 등록신청시 사업장의 위치,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등을 포함한 등록신청서와 함께 ①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 ②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③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75]

특히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76] 그리고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77] 이후 수중레저교육자는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78] 다만 해양

74) 수중레저법 제15조제1항 및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1
75)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지 제2호
76) 수중레저법 제11조제3항
77)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78)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수산부는 아직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고시하고 있지 않고, '수중레저교육 표준'이라는 문서를 통해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로 구분한 교육 표준을 안내하고 있다.[79]

〈표 4-3〉 수중레저교육자 관련 수중레저법령 주요 내용 및 한계점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수중레저법	제11조 (사업자의 조치등)	•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7조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등)	•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제10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것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7조 (수중레저활동 관련 교육)	• 수중레저교육자는 교육자 자격을 유지하고 해당 교육단체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		
한계 및 문제점	•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교육 인정단체의 지정 신청을 받아 고시하고 있으나, 지정 이후 휴업·폐업 등 해당 단체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지정 신청을 하는 단체가 거의 전무한 상황 • 이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는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한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6.2.7.)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79) 해양수산부(2017a), pp. 1-7.

2) 법리적 검토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하여 법리적 측면에서 개업·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사항 보고, 자료 제출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는 국가가 교육자 자격 취득의 전제로 공인한 것으로서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인이 아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행정작용의 보조자 또는 공인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행정법상 통설·판례에 따라 보고의무, 자료제출의무, 감독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수중레저법」 제18조와 제23조에 따라 휴·폐업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인정단체를 제외하는 것은 입법적 불비 또는 불균형·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해 휴업·폐업 신고 및 변경사항 보고, 자료 제출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목적상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 즉, 현행 법령 규정에 따르면 인정단체 현황 파악 불가, 폐업·휴업 미신고에 따른 교육 품질 및 안전관리 확인 곤란 등 문제가 있다는 점, 의견조사 결과 해당 단체 스스로도 신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안전관리·정책수립 등 목적의 정당성, 변경신고·자료제출 등 수단의 적합성, 신고 대상 의무가 기본 정보 중심으로 침해의 최소성 등 비례원칙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체계상 신고·자료제출 등 의무의 부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유보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행사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

3) 개정안

위에서 살펴본 법리적 검토 내용에 따라 신고·자료제출 등 의무의 부과에 관한 근거와 기본 틀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신고사항, 절차, 서류 등 구체적인 기준, 범위, 형식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타 세부 운영 사항이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수중레저법」은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관리,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신고와 자료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제7조의2를 추가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 대상, 자료제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4〉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체계 개선 관련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법률	〈신설〉	제11조의2(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교육 인정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 인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 2. 휴업 또는 폐업 3. 교육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③ 교육 인정단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교육 운영, 시설, 인력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 인정단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정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신설〉	제7조의2(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운영계획 2. 교육시설의 규모 및 주요 설비 3. 교육 강사의 수 및 자격 4. 등급별 교육 매뉴얼 5. 대표자의 성명 6. 기관 또는 사업체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대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교육 인정단체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운영 실적 2. 교육과정 및 매뉴얼 3. 교육 인력 현황 4. 안전관리 체계 및 사고 발생 현황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중레저교육 인정단체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정책 개선방안

1.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2016년 「수중레저법」이 제정되고, 2018년 '제1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수중레저 분야가 해양관광정책 영역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년대 국내에 수중레저가 도입되기 시작한 이래 수중레저 분야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근거 법률 제정과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중레저 분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레저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는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 교육 이수자 규모와 강사 활동 현황, 임대업, 운송업, 교육업 등 각 수중레저사업 종류별 운영 실태, 수중레저활동자의 규모와 활동 행태, 다이빙선박 보유 현황, 수중레저장비 시장 규모 등은 수중레저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수중레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개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와 사업체 등에서 영업 관리 목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수중레저 부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수중레저활동자의 규모와 수중레저 관련 산업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가 뒷받침되지 않은 여건에서 도출된 수중레저정책은 현장의 정책 수요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 성과를 정량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해 수중레저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기보다 수중레저

분야 전문가의 경험에 기반한 자료에 의존해 정책이 추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객관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수중레저정책은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취약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재정 투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한편 체계적인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연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자의 안전 확보가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와 원인, 사고 유형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청에서 수중레저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집계하고 있는 자료는 사고 발생일시와 요일, 사고 원인, 총 사고 인원, 사고 발생 장소와 주소 등이며, 사고 원인을 조석 미인지, 타인부주의, 수영 미숙, 질병, 안전 미준수, 해양 장애물, 기상 불량,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80] 이로 인해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수중레저정책이 집행력과 실천성,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 통계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수중레저 통계체계를 개발·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수중레저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통계지표를 선별 후 이들 지표를 중심으로 통계 수집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중레저 활동자 현황과 산업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별 교육 이수자 수, 강사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중레저사업체를 대상으로는

80) 해양경찰청(2024.12).

사업체 기초 현황, 수중레저 선박 보유 현황, 이용자 규모 및 활동 특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조사·수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중레저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기술력 및 국산화 수준, 국내 장비 수요와 수출 규모, 향후 시장 전망 등에 대한 통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중레저산업 육성 정책을 개발·추진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중레저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체계도 정책적인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사고 발생일시와 총 사고 인원, 사고 발생 장소 등과 같이 안전관리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어려운 단순 사고 건수 집계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성별, 연령, 활동 유형, 사고 원인 등 통계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효과적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중레저 안전사고 통계 항목과 분류 체계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중레저 분야에 대하여 새롭게 수집·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통계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산업 통계조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수중레저 통계체계는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수중레저정책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실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의 수용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수중레저 활동 및 안전사고 현황, 수중레저사업체 경영 실태 및 산업 현황 등 수중레저 관련 기초 통계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확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수중레저정책의 체계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 전반을 포괄하는 통계체계의 단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초 통계 항목에 대한 세분화와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축적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정책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정책통계 데이터를 목록화하고, 수중레저사업 등록 현황 및 운영 실태,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 기초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이수자 규모 및 활동자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기존 해양관광산업 통계와 연계 검토해 수중레저 활동자 및 산업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중레저사업체 패널조사와 장비 분야 조사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수중레저산업 규모와 구조, 시장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 담당자가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마리나정보화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표 4-5〉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방안

구분	통계체계	주요 내용
단기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및 사업체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통계조사 활용: 수중레저업 부문 매출액,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분석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자료 분석: 업단체 제출 자료, 시설 및 자원(리조트, 교육센터, 자원 현황), 수중레저사업 등록 현황, 사고 및 단속 현황 • 연구기관의 해양관광 관련 실태조사 중 수중레저 부문 추출: 이용행태 및 파급효과 분석
장기	• 수중레저사업체 패널조사(수중레저 관련 업·단체 대상 분기별 패널조사 실시·분석) : 장비 생산, 수입, 판매, 매출액, 종사자 수 등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자료 시계열화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시설 및 자원,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고 및 단속 현황 • 이용행태 및 파급효과 분석: 수중레저활동 실태조사 실시·분석

자료: 저자 작성

2.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인식 강화

수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고 즐기는 수중레저 활동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양레저활동이다. 따라서 수중레저 활성화 정책은 활동자의 안전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중레저는 민간 교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성장했으며, 활동자의 안전관리 또한 교육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중레저 활동자의 부주의와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비중이 78.9%에 달하는 것을 보면 수중레저 안전사고는 활동자의 낮은 안전인식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에 기반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자의 안전인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수중레저는 활동 환경과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활동자의 판단과 대응 역량 수준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수중레저 활동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앞서 수중레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전인식의 내재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절반 정도의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인식을 강화하여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중레저 안전인식을 강화하는 안전교육은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기와 성숙기에 해당하므로,[81]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중레저 안전교육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중

81) 국민안전교육플랫폼(검색일: 2026.4.16.)

레저 안전교육 제공을 통해 수중레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등과 같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기부터 수중레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인식을 체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는 수중레저활동자뿐만 아니라 어업인 등 연안지역 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다. 특히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업인은 동일한 공간을 각각 다른 목적과 방식으로 이용함에 따라 갈등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중레저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업인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업인 대상 수중레저 안전교육은 수중레저활동의 특성, 다이빙 신호기 등 수중레저활동자와의 충돌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행동 수칙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빈번히 경험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수중레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안전교육에 기반한 활동자의 안전인식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대상의 확대, 교육 내용의 전문화 및 맞춤화, 교육 방식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수중레저 안전교육 체계를 수중레저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인식이 강화되면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고,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수용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즉,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는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의 효과성과 실천성의 강화로 연결되어, 수중레저 활성화 및 해양관광 분야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6〉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 방안

구분	정책사업	주요 내용
단기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 교실'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대 적용(수중레저 안전교육 커리큘럼 마련, 수중레저 참여 기회 확대) • 어업인 대상 수중레저 안전교육 실시(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활용)
장기	수중레저 안전인식 교육체계 고도화	•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 확대, 교육 내용 전문화 및 맞춤화, 교육 방식 다양화 등 수중레저 교육체계 고도화 추진 • 수중레저정책과 수중레저 안전교육 체계 연계

자료: 저자 작성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및 사례 검토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대상 및 시간·공간적 범위, 연구 수행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수중레저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국외 수중레저 안전관리 및 활동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목표, 연구 대상 및 범위,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검토하는 한편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외 수중레저정책과 안전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과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수중레저 관련 법·제도 형성 배경과 제1

차와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사업의 세부 내용및 성과를 검토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이관된 배경과 주요 이관 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사회·제도적 환경이 유사하고 해양공간 이용 방식이 유사한 일본의 수중레저 현황을 살펴보고 수중레저 안전사고 대응 등 안전관리 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야간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수중레저법」과 「연안사고예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둘러싼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가별 제도 운영상의 차이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통해 안전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 안전관리 법·제도 정비 방향,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의견조사에 앞서 제2장에서 검토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현황과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현안, 제3장 제1절을 통해 파악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절차와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구성 등에 대하여 수중레저 분야 및 설문조사·분석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워크숍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설계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에 대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의견을 취합하는 한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을 통해 도출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한계에 대하여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의견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및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②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책적 측면에서는 ① 수중레저정책의 집행력과 실천성, 현장 적용성 확보를 위한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②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대상별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아동 및 청소년, 어업인 등), ③ 수중레저 안전인식 교육체계 고도화 및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970년대 우리나라에 수중레저가 처음 도입된 이후 「수중레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수중레저는 민간 교육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후 수중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등 기구와 장비에 대한 안전기준,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등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수중레저법」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양한 안전관리 제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수중레저 관련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활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법령을 해석·운용하는 정책 현장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 현황과 사례 분석, 야간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현안 검토,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의견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제도의 실

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및 하위법령, 규정의 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중레저법」에 따른 야간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입법 미비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민간단체의 자격증과 교육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모두 법령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 규정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는 수중레저교육자를 매개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과 역량을 결정하는 수중레저 안전관리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에 대한 관리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신고·자료제출 등 의무의 부과에 관한 근거와 기본 틀은 「수중레저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사항, 절차, 서류 등 구체적인 기준, 범위, 형식 등에 대해서는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기타 세부 운영 사항이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를 통해 규정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중레저 분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중레저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는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수중레저 정책은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재정 투입이 어렵다. 따라서 수중레저정책이 집행력과 실천성,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중레저 통계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수중레저 통계체계의 정비는 단계별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통계 데이터를 목록화하고, 기초 정보를 파악

한다. 또한 기존 해양관광산업 통계를 함께 검토해 수중레저 활동자 및 산업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중레저사업체 패널조사와 장비 분야 조사 체계를 개발하고, 정책 담당자가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중레저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보다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등 기존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안전인식 강화를 위한 대상별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과 수중레저 안전인식 교육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수중레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절반 정도의 비율로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책이다. 이와 같은 안전인식은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체득할 수 있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안전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시기이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찾아가는 생존수영교실' 등 기존에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기부터 수중레저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인식을 체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 및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중레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어업인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중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중레저 안전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수중레저 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의 전문화 및 맞춤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육 방식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중레저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갖추고 집행·확산될 수 있도록 수중레저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1〉 수중레저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제언

구분	주요 내용	개선 방안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안전관리요원 관련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및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개정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 개정	• (주체) 해양수산부 • (자문) 학·연 전문가	중기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제1항 안전관리요원 용어 통일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제2항에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규정 조문 신설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관리 관련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 개정	• 「수중레저법」 제11조의2에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관리,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신고 대상, 자료제출 대상 등 규정 신설		
정책 개선방안 마련	수중레저 통계체계 정비	• 수중레저활동자 규모 및 산업 현황 조사	• (주체·협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자문) 학·연 전문가	단기
		• 수중레저사업체 패널조사 체계 구축	• (주체·협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자문) 학·연 전문가	장기
	수중레저 안전인식 강화	• 대상별 수중레저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공(아동·청소년, 어업인 등)	• (주체·협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	중장기
		• 수중레저 안전인식 교육체계 고도화	• (주체·협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 (자문) 학·연 전문가	중장기

자료: 저자 작성

한편 본 연구에서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해 제안한 정책적 제언을 비롯하여 「수중레저법」 및 하위법령, 규정 개정과 연계하여 향후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개정과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로 다양하게 운영 중인 교육 과정을 반영한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수중레저교육 표준'은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의 4단계 체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교육환경과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포함한다. 현행 수중레저교육 표준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다양한 교육 과정과 구성, 명칭을 포괄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로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교육 과정이 '수중레저교육 표준'의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수중레저교육 표준을 개정하는 한편 향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신청 시 수중레저교육 표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관련 서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체계적으로 개발·집행되기 위한 통계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통계체계가 정비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중레저법」에 통계 작성 및 관리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수중레저법」에는 통계 생산과 관련된 조문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수중레저 통계체계가 법적 근거에 기반해 주기적으로 수집·생산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수중레저활동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수중레저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대한민국 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윤병두(2020),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6(7), pp. 777-786.

장유락(202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37(3), pp. 157-189.

장유락·국승기(2025),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이관에 따른 해양경찰청 조직 및 인력 개편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5(4), pp. 125-151.

정경화(2020),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6(1), pp. 47-56.

한동일 외(2022),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스쿠버 레스큐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양환경안전학회지, 28(7), pp. 1179-1190.

해양경찰청(2024.12), 수중레저사고 발생 현황(내부자료).

해양수산부(2014),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_____(2017a), 수중레저교육 표준.

_____(2018), 제1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018~2022).

_____(2022a),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가이드북.

_____(2022b),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연구.

_____(2023),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2023~2027).

_____(2024a), 마리나산업 등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_____(2024b), 해양관광 실태조사 Rawdata(내부자료).

_____(2025.8.6.),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간담회 결과 보고(내부자료).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외 문헌

Divers Alert Network(2020), DAN Annual Diving Report.

NOAA(2025), NOAA Diving Standard & Safety Manual.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검색일: 2026.1.28., 2026.2.7.)

_____,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이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6019&lsId=&efYd=20250423&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검색일: 2026.2.5.)

_____,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main.html(검색일: 2026.2.24.)

국민안전교육플랫폼, 생애주기 안전교육지도, https://kasem.safekorea.go.kr/ptlCont.do?url=lfCyclMap(검색일: 2026.4.16.)

마리나 정보화 시스템, 정보공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 자격증 명칭, https://infomarina.go.kr/startup/info_view.do?no=149(검색일: 2026.2.7.)

매일일보(2020.6.7.), 보령해경, 금지된 '야간 불법 수중레저활동자' 단속조치,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17508(검색일: 2026.2.7.)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연안사고예방법, https://imsm.kcg.go.kr/CSMS/main/cs/CostSafeLawInfo.do(검색일: 2026.2.7.)

_____, 자주묻는질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현황, https://imsm.kcg.go.kr/CSMS/bbs/faqBbsListRB.do#(검색일: 2026.2.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연안체험활동 가이드 북(해양경찰청), https://www.jbe.go.kr/office/board/view.jbe?boardId=BBS_0000633&menuCd=DOM_000000714005009001&paging=ok&startPage=1&searchOperation=AND&dataSid=846515(검색일: 2026.2.7.)

천문우주지식정보, 생활천문관, https://astro.kasi.re.kr/life/pageView/9(검색일: 2026.2.6.)

프레시안(2020.6.17.), 태안해경, 야간 수중 레저활동 계도·단속 강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709110534173(검색일: 2026.2.7.)

한겨레(2025.12.8.), "불빛이 안 움직여"…포항서 야간 스쿠버다이빙하던 40대 여성 숨져,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33345.html(검색일: 2026.2.7.)

한려투데이(2018.4.5.), 통영해경, 거제 해상 야간 수중레저 활동자 3명 검거, https://www.hanryeo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89(검색일: 2026.2.7.)

202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및 수중레저업 등록 해경청 이관, https://whatsnew.mofe.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TYPCD&difField1=DIFFIELD22&difSer=c25d9c47-3d50-4888-a236-dd14fd718969(검색일: 2026.2.7.)

Cカード協議会, 動向調査, 2018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77(검색일: 2026.1.20.)

_____, 動向調査, 2019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295(검색일: 2026.1.20.)

_____, 動向調査, 2020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465(검색일: 2026.1.20.)

_____, 動向調査, 2021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756(검색일: 2026.1.20.)

_____, 動向調査, 2022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891(검색일: 2026.1.20.)

_____, 動向調査, 2023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1005(검색일: 2026.1.20.)

_____, 動向調査, 2024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1157(검색일: 2026.1.20.)

_____, 動向調査, 2025年認定動向調査結果, https://c-card.org/archives/1301(검색일: 2026.1.20., 2026.2.7.)

_____, 認定ダイバーができること, 「安全なダイビングのためのセーフティガイド」を発行しました(검색일: 2026.1.20.)

_____, Cカード協議会とは, https://c-card.org/archives/category/about(검색일: 2026.1.20.)

DAN Japan, https://www.danjapan.gr.jp/(검색일: 2026.2.7.)

Underwater Kinetics, https://www.uwkdive.com/blogs/scuba-guide/ultimate-guide-to-night-diving(검색일: 2026.2.7.)

WRSTC, DIVE STANDARDS, https://wrstc.com/standards-downloads/(검색일: 2026.2.7.)

_____, Minimum Course Content For Entry-Level Rescue Diver Certification, https://wrstc.com/downloads/05%20-%20Entry%20level%20Rescue%20Diver.pdf(검색일: 2026.2.7.)

_____, WRSTC Member Councils, https://wrstc.com/wrstc-member-councils/(검색일: 2026.2.7.)

国土交通省, ダイビング船の安全対策について, https://www.mlit.go.jp/maritime/maritime_mn6_000027.html(검색일: 2026.2.7.)

_____, ガイドライン概要, https://www.mlit.go.jp/maritime/maritime_mn6_000027.html(검색일: 2026.2.7.)

_____, ダイビング船の安全対策ガイドライン, https://www.mlit.go.jp/maritime/maritime_mn6_000027.htm(검색일: 2026.2.7.)

海上保安庁, 令和５年海難の現況と対策, https://www6.kaiho.mlit.go.jp/info/keihatsu/20240614_state_measure01.pdf(검색일: 2026.1.20.)

법률 자료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23호, 2025.7.1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9호, 2024.10.2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5호, 2025.7.1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62호, 2021.4.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089호, 2024.12.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702호, 2024.11.12.)

2025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6호, 2025.7.4.)

관련 자료 목록

김석규(2025), 킹던(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한 수중레저 안전관리 정책변동 과정 분석, 한국해양경찰학회보, 15(4), pp. 173-192.

이충희·김수경(2018), 문화·관광 통계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해양경찰청(2025.6.18.), 2025년 수중레저 소통간담회 회의자료(내부자료).

해양수산부(2017b), 수중레저산업 통계지표 개발 및 수중레저법 하위 법령안 제정 연구.

_____(2025),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및 현행화 계획(내부자료).

_____(2025.4.), 수중레저사업 등록 자료(내부자료).

_____(2025.7.), 안전관리요원 관련 수중레저법 개정검토 자료(내부자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12.)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 2022-7호, 2022.10.18.)

부 록

1. 설문지

수중레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260107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수중레저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수중레저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 제도 정비, 수중레저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니 귀 업체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1월

※ 본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알앤알컨설팅(주)'에 위탁하여 실시합니다.

※ 문의처 - 설문내용 관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알앤알컨설팅(주)
- 조사/불편 관련 : 알앤알컨설팅(주)

귀 기관/단체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관리자(과장급 이상)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 응답자 입력사항

기관/단체명	※ 다음 페이지의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을 보시고 정확한 기관/단체명을 작성해 주십시오.		
응답자 성명		직급	
연락처	유선		
	무선		

※ 응답자님의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을 다시 파악해야 할 경우 활용되며, 조사기간 후 일괄 폐기됩니다.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2025년 말 기준)

※ 아래 목록에서 응답자님이 속한 기관에 대해 비고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연번	단체명	비고
1	세계스킨스쿠버연맹	
2	(사)대한잠수협회	
3	SDD Internataional / RAID	
4	PSAI KOREA	
5	NAPD	
6	NASDS KOREA	
7	ANDI International KOREA	
8	IANTD	
9	NDL KOREA	
10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11	SSI KOREA	
12	BSAC KOREA	
13	(사)한국산업잠수협회	
14	SDI.TDI.ERDI	
15	NAUI	
16	UTR KOREA	
17	NASE KOREA	
18	UTD KOREA	
19	IDIC	
20	IDEA-ASIA	
21	PDIC-SEI ASIA	
22	SNSI KOREA(국제잠수안전협회)	
23	YMCA SCUBA(서울 YMCA)	
24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25	KPSDA((사)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	
26	PADI	
27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28	AFIA	
29	ACUC	
30	국제잠수교육협회(ISEA)	
31	(사)대한안전연합	
32	㈜산업잠수협동조합	
33	AIDA KOREA	
34	(사)한국레저안전협회	
35	PTRD KOREA	
36	Global Underwater Explorers	
37	PSA	
38	ASTD(에이에스티디)	
39	유티에이(UTA)	
40	에이피디아이(APDI)	
41	PSS(한국지사)	
42	(사)한국스포츠레저교육협회	
43	한국프리다이빙협회(KFA)	
44	공공재난안전구조협회	
45	아일렉(ILEC)	
46	국제 다이빙 협회(IDA)	
47	MFI	
48	몰차노브 코리아(Molchanovs Korea)	
49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PART A. 일반현황

〈 A 1 〉 귀 기관 일반현황을 입력해 주십시오.

1 국내 대표자명		1-1. 대표자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2. 기관 성격	국내 자생 기관/단체	해외단체·기구·협회의 국내 지부/대표부	
3 소재지 (본부)	국내 본부 소재지(주소) :		
	국내에 본부 소재지가 없는 경우 해외 주소 :		
4. 국내 본부 설립년월	년	월	
5. 사업자번호	□ ① 있음 ➜ 아래 칸에 사업자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② 없음		
	-	-	
6.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시기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년도 (년)		
7. 회원 수	현재까지 국내 초급다이버 C카드 총 발급자 수 (명)		

PART B. 기관 운영현황

〈 B 1 〉 귀 기관의 수중레저 교육과정을 초급(Open Water)에서부터 최상위 단계까지 구분하여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예시〉

구분: 단계 분류 예시		귀 단체의 교육과정 단계 분류(명칭 포함)	해양수산부 교육 표준 분류 기준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	해당없음
일회성 체험	Try	체험다이버	○				
초급	Open Water	오픈 워터	○				
↕	Advanced OW	중급1		○			
	〃	중급2		○			
	〃	상급1			○		
	Dive master	상급2			○		
최상위 (지도자)	Instructor	지도자				○	
기타							

※ 예시 분류를 토대로 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추가 가능합니다.

* 초급 단계부터 최상위 단계까지 교육과정을 순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 귀 기관에 안전관리요원 등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이 없다면 '없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분 : 단계 분류 예시		귀 단체의 교육과정 단계 분류(명칭 포함)	해양수산부 교육 표준 분류 기준				
			초급	중급	상급	지도자	해당없음
일회성 체험	Try						
초급	Open Water						
↕	Advanced OW						
	〃						
	Dive master						
최상위 (지도자)	Instructor						
기타							

※ 예시 분류를 토대로 기관 교육과정에 따라 추가 가능합니다.

〈 B 2 〉 수중레저법에서는 야간수중레저활동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귀 기관의 수중레저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요원은 어느 정도 단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귀 기관의 해당 과정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단계를 선택하신 이유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 선택하신 교육과정의 명칭, 해당 과정을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요 요건(교육 시간, 실습 내용, 안전·구조 역량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교육과정 명칭	( ) 이상
교육과정 (요건, 역량)	

〈 B 3 〉 다이빙선박을 이용하는 수중레저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1)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인명구조요원, 수상구조사와 유사하게)
☐ 2) 안전관리요원에게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 비용 보조
☐ 3)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위한 공간(야간 수중레저활동구역) 지정
☐ 4) 연안사고예방법과의 정비를 통한 통합 관리
☐ 5) 레저선박 이용 시 신고 체계 통합(야간항해+야간 수중레저활동+수중형 활동 신고 통합)
☐ 6) 기타( )

〈 B 4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 지정된 이후, 귀 기관의 일반현황에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까?

☐ 1) 변경 사항 있음 ➜ 〈 B 6-1 〉로 이동
☐ 2) 변경 사항 없음 ➜ 〈 B 7 〉로 이동

〈 B 4-1 〉 본 문항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의 일반현황 변경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①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 지정된 이후, 귀 기관의 일반현황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아래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② 귀 단체의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현황 항목 중 '신고가 필요한 변경'과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사소한 변경'에 대하여 항목별로 의견을 주십시오.

항목	변경 여부		신고 필요성	
	있음	없음	필요함	필요 없음
1) 기관/사업체 명칭	1☐	2☐	1☐	2☐
2) 기관/사업체 소재지	1☐	2☐	1☐	2☐
3) 기관/사업체 전화번호	1☐	2☐	1☐	2☐
4) 대표자 성명	1☐	2☐	1☐	2☐
5) 등급별 교육 매뉴얼	1☐	2☐	1☐	2☐
6)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강사 수	1☐	2☐	1☐	2☐
7)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시설 규모	1☐	2☐	1☐	2☐
8)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운영계획	1☐	2☐	1☐	2☐

〈 B 5 〉 수중레저법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 이후 일반현황이 변경되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변경 신청 절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변경 신청에 대하여 알지 못함
☐ 2) 신청 서류와 절차 등이 복잡함
☐ 3)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함
☐ 4) 신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5) 기타 ( )

PART C. 정책 개선 방안

〈 C 1 〉 국내 수중레저와 관련해서는 현황자료가 풍부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수중레저시장의 동향 파악과 규제 사항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초자료의 수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조사 항목별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목	필요성 낮음	←	보통	→	필요성 높음
1) 수중레저 활동자 규모(C-카드 발급 건수 등)	1☐	2☐	3☐	4☐	5☐
2) 수중레저사업체 경영 현황(매출액, 직원수 등)	1☐	2☐	3☐	4☐	5☐
3) 수중레저 안전사고 현황(사상자, 원인 등)	1☐	2☐	3☐	4☐	5☐
4) 국내 우수 수중레저 포인트 현황	1☐	2☐	3☐	4☐	5☐
5) 수중레저 장비제조업 동향(생산 항목, 생산액 등)	1☐	2☐	3☐	4☐	5☐
6) 수중레저활동 현황 조사(세부 활동 내용, 소요 비용 등)	1☐	2☐	3☐	4☐	5☐
7) 수중레저 관련 규제 개선 수요	1☐	2☐	3☐	4☐	5☐
8) 기타( )	1☐	2☐	3☐	4☐	5☐

〈 C 2 〉 국내 수중레저시장은 스노클링,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까지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3년 간 국내 수중레저시장과 관련된 다음 각 항목별 성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가능성 매우 낮음	←	보통	→	가능성 매우 높음
1) 스노클링	1□	2□	3□	4□	5□
2) 스킨다이빙	1□	2□	3□	4□	5□
3) 스쿠버다이빙	1□	2□	3□	4□	5□
4) 프리다이빙	1□	2□	3□	4□	5□
5) 국내 수중레저시장	1□	2□	3□	4□	5□
6) 동남아시아 지역 등으로 국내 활동시장 이동	1□	2□	3□	4□	5□

〈 C 3 〉 국내 수중레저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무엇이며, 그 시급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래 항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과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각각 순서대로 5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① 중요성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4순위 ( )
② 시급성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4순위 ( )

구분
1) 기반시설(탱크, 계단, 로프 등) 확충
2) 수중레저 정보(다이빙 포인트, 교육시설) 제공
3) 다이빙 포인트 조성사업 지원(인공어초, 폐선투하)
4) 다이빙 체험지구(다이빙 구역), 체험어장 지정
5) 다이빙 선박 정박시설(마리나) 조성·지정
6) 수중레서 상비 개발 국가R&D 추신
7) 수중레저활동자/어촌 지역주민 간 마찰/갈등 해소
8) 다이빙 교육시설 확충(실내 풀, 해상 다이빙교육장)
9) 수중레저사업체 대상 홍보 지원
10) 수중레저활동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 지원
11) 학교교육(생존수영)과의 연계
12) 해양레저체험교실 프로그램 확충(다이빙, 스노클링)
13) 수중레저 동호회 육성
14) 수중레저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15) 수중레저사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
16) 수중레저사업체 관리/운영 컨설팅

〈 C 4 〉 귀 기관이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 각 항목에 대해 현재 사업 여건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나쁨	←	보통	→	매우 좋음
1) 기반시설(진입계단, 안전로프 등) 부족	1□	2□	3□	4□	5□
2) 다이빙 포인트에 대한 정보 부족	1□	2□	3□	4□	5□
3) 수중레저활동 지역 주변 볼거리 부족	1□	2□	3□	4□	5□
4) 다이빙선박의 정박/보관 공간 부족	1□	2□	3□	4□	5□
5) 공기탱크(충전시설) 등 렌탈 장비 활용 불편	1□	2□	3□	4□	5□
6) 국내 해양환경 여건의 제약(계절적 한계)	1□	2□	3□	4□	5□
7) 지역 어업인의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갈등	1□	2□	3□	4□	5□
8) 수중레저교육 공간 부족(다이빙센터, 비치다이빙)	1□	2□	3□	4□	5□
9)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홍보) 부족	1□	2□	3□	4□	5□
10)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 부족	1□	2□	3□	4□	5□
11) 수중레저활동자의 해양생태계 보호 인식 부족	1□	2□	3□	4□	5□
12) 수중레저교육 단체의 난립	1□	2□	3□	4□	5□
13) 국내 수중레저산업 발전 전망	1□	2□	3□	4□	5□
14) 법/제도적 규제	1□	2□	3□	4□	5□
15) 상품/서비스 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1□	2□	3□	4□	5□
16) 자금조달	1□	2□	3□	4□	5□

〈 C 5 〉 수중레저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자와 어촌 지역주민 간의 마찰·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	

〈 C 6 〉 현장에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제도적 규제로 인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	

〈 C 7 〉 수중레저사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	
정책 건의사항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 자격증 명칭[82)]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 자격증 명칭['25.9월]

우리부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동행해야 하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로부터 강사 자격 취득 또는 비상구조(RESCUE) 과정이 포함된 자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여 안내해 왔습니다.

이에,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 안전관리요원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포함한 **자격증 명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우리부에서 생산한 자료가 아닌 각 단체별로 취합 · 정리한 자료로 자격증의 명칭이 단체별로 상이하고 단체의 내부 상황과 매뉴얼의 변동에 따라 자격 체계 및 명칭 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격증 관련 변동사항이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야간 안전관리)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0조(야간 수중레저)

① 야간 수중레저활동 시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1명 이상의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해야 한다.

82)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별 자격증 명칭'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체 총 52쪽 중 일부만 부록에 수록함. 전체 자료는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자주묻는질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현황(검색일: 2026.2.7.) 참고

□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25.9월 기준)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2017-1	세계스킨스쿠버연맹	2017-27	PADI
2017-2	(사)대한잠수협회	2017-28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2017-4	SDD International / RAID	2017-29	AFIA
2017-5	PSAI KOREA	2017-30	ACUC
2017-6	NAPD	2017-31	국제잠수교육협회(ISEA)
2017-7	NASDS KOREA	2017-32	(사)대한안전연합
2017-8	ANDI International KOREA	2017-33	㈜산업잠수협동조합
2017-9	IANTD	2019-1	AIDA KOREA
2017-10	NDL KOREA	2020-1	(사)한국레저안전협회
2017-1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2020-2	PTRD KOREA
2017-12	SSI KOREA	2022-1	Global Underwater Explorers
2017-13	BSAC KOREA	2022-2	PSA
2017-14	(사)한국산업잠수협회	2022-3	ASTD(에이에스티디)
2017-15	SDI.TDI.ERDI	2022-4	유티에이(UTA)
2017-16	NAUI	2023-1	에이피디아이(APDI)
2017-17	UTR KOREA	2023-2	PSS(한국지사)
2017-18	NASE KOREA	2023-3	(사)한국스포츠레저교육협회
2017-19	UTD KOREA	2023-4	한국프리다이빙협회(KFA)
2017-20	IDIC	2024-1	공공재난안전구조협회
2017-21	IDEA-ASIA	2024-2	아일렉(ILEC)
2017-22	PDIC-SEI ASIA	2024-3	국제 다이빙 협회(IDA)
2017-23	SNSI KOREA(국제잠수안전협회)	2024-4	MFI
2017-24	YMCA SCUBA(서울 YMCA)	2025-1	몰차노브 코리아(Molchanovs Korea)
2017-25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2025-2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2017-26	KPSDA((사)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		

○ 이하는 수중레저교육 표준상 등급(초급, 중급, 상급, 교육자)에 대응하는 각 단체별 자격증 명칭

○ 이 중 안전관리요원(RESCUE급 이상)의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2017-1 세계스킨스쿠버연맹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오픈워터 스쿠버다이버	
중급	어드밴스 스쿠버다이버	
상급	레스큐 다이버 다이버 마스터	
교육자	보조강사 강사 강사 트레이너 코스 디렉터 코스 트레이너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스킨 다이버	
중급	스킨 레스큐 다이버	
교육자	스킨 인스트럭터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스노클 다이버	
중급	스노클 레스큐 다이버	
교육자	스노클 인스트럭터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프리다이버 다이버 레벨1	
중급	프리다이버 다이버 레벨2	
상급	프리다이버 다이버 레벨3 프리다이버 다이버 레벨4 레스큐 프리다이버	
교육자	프리다이브 인스트럭터 레벨1 프리다이브 인스트럭터 레벨2 강사 트레이너 코스 디렉터 코스 트레이너	

2017-2 (사)대한잠수협회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오픈워터 다이버 EOTD(에센셜 오브 테크니컬 다이버)-테크니컬 프리다이빙 Lv. 1, 2 급류구조원 Lv. 1 수상구조사 2급 생존수영 2급	
중급	어드밴스 다이버 TECH-D(텍원 다이버)-테크니컬 다이버 프리다이빙 Lv. 3	
상급	레스큐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마스터 다이버 TECH 2, 3, Pro-D(텍투,쓰리,프로)-테크니컬 프리다이빙 Lv. 4 급류구조원 Lv. 2 수상구조사 1급 생존수영 1급	
교육자	스쿠버 강사 스쿠버 강사 트레이너 프리다이빙 강사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급류구조 강사 급류구조 강사 트레이너 응급처치 강사 응급처치 강사 트레이너 수상구조 지도사 생존수영 지도자 응급처치 강사	

2017-4 SDD International / RAID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오픈워터 다이버 스쿠버 다이버 오픈워터 프리다이버	
중급	어드밴스드 다이버 익스플로러 30 다이버 Deep 40 다이버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응급처치 다이버 레스큐 다이버	
상급	마스터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교육자	스페셜티 강사 강사 마스터 강사 강사 트레이너 코스디렉터	

2017-4 Dive RAID International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오픈워터 다이버 스쿠버 다이버 오픈워터 프리다이버	
중급	어드밴스드 다이버 익스플로러 30 다이버 Deep 40 다이버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산소관리 다이버 응급처치 다이버	
상급	마스터 다이버 마스터 레스큐 다이버	

	다이브 마스터 마스터 프리다이버 다이브마스터 프리다이버	
교육자	스페셜티 강사 강사 다이브 마스터 강사 마스터 강사 평가관 강사 트레이너 강사 트레이너 트레이너 프리다이빙 강사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빙 강사 마스터 프리다이빙 강사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마스터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평가관 프리다이빙 CCR 강사 CCR 트레이너 감압 강사 트라이믹스 강사 트라이믹스 트레이너 익스텐디드 감압 강사 익스텐디드 감압 트레이너 노목식 감압 강사 노목식 감압 트레이너 리미티드 하이폭식 트라이믹스 강사 리미티드 하이폭식 트라이믹스 트레이너 하이폭식 트라이믹스 강사 하이폭식 트라이믹스 트레이너	

2017-5 PSAI KOREA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오픈워터 다이버(Open Water Diver) 프리다이버 오픈워터 프리다이버	
중급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다이버(Advanced Open Water Diver) 어드밴스드 프리다이버	
상급	레스큐 다이버(Rescue Diver) 세이프티 프리다이버 마스터 다이버(Master Diver) 마스터 프리다이버 어드밴스 나이트록스(Advanced Nitrox Diver) Extended Range Nitrox Diver Level 1 Trimix Fundamentals Diver Level 2 Expedition Trimix Diver Level 3 Explorer Trimix Diver	
교육자	보조강사(Dive Master, Assistant Instructor) 강시(Instructor) 트레이너(Instructor Trainer) 평가관(Instructor Trainer Examiner)	스쿠버다이버 프리다이버

2017-6 NAPD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오픈워터 다이버	
중급	어드밴스 다이버	
상급	레스큐 다이버 다이버 마스터	
교육자	강사 트레이너 코스 디렉트	

2017-7 NASDS KOREA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Open Water Diver	
중급	Advanced Open Water Diver Nitrox Diver	
상급	Rescue diver Master diver	
교육자	Divemaster(CDM) Assistant Instructor(ASI) Open Water Instructor(OWI) Instructor Trainer Director(ITD)	

2017-8 ANDI International KOREA

교육 표준상 등급	발급 자격증 명칭	비고
초급	Open Water Diver(OWD) SafeAir Diver(SAD) Night Diver(NGT) Navigation Diver(NAV)	
중급	Advanced Open Water Diver(AOW) Completed SafeAir User(CSU) SafeAir Wreck Diver Rebreather Diver	
상급	Rescue diver(RSD) Master Diver(MSD) First Aid Diver(FAD) CPR Provider(CPR) First Aid Provider(FAP) Technical SafeAir Diver Technical Tri-Mix Diver Technical Wreck Diver Technical Rebreather Diver Cave Diver Cave Explorer Extended Range Diver	
교육자	Divemaster(CDM) Assistant Instructor(ASI) Open Water Instructor(OWI) Advanced Open Water Instructor(AOWI) Master Instructor(MSI) Instructor Trainer(IT)	

3. 주요 선행연구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	• 과제명: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홍장원·이종훈·안용성(2012) • 연구목적: 수중레저활동 제약요인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한 수중레저 활성화 방안 도출	• 문헌조사, 통계분석 • 사례분석 • 설문조사	• 국내 해양관광 실태 분석 • 국외 수중레저 활동 여건 분석 • 수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2	• 과제명: 해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14) • 연구목적: 수중레저 활성화 법률(안) 마련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 수중레저 실태 조사 • 수중레저 제도개선 방안 분석 • 수중레저 활성화 법률(안) 도출
3	• 과제명: 수중레저산업 통계지표 개발 및 수중레저법 하위 법령안 제정 연구 •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17b) • 연구목적: 수중레저산업 통계 지표 개발 및 하위 법령(안) 마련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 수중레저산업 기초통계 분석 • 수중레저산업 통계지표 발굴 방안 • 수중레저법 하위 법령(안) 마련
4	• 과제명: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22b) • 연구목적: 제2차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안) 마련을 통한 정책사업 발굴 및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 공청회 실시	• 수중레저 정책 여건 및 이용 현황 분석 • 수중레저 지역별 의견수렴을 통한 여건 분석 • 수중레저 정책 방향 설정 및 추진 과제 도출
5	• 과제명: 마리나산업 등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 연구자(년도): 해양수산부(2024a) • 연구목적: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정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수중레저법 연계 검토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사례분석 • 전문가 자문 • 법률분석	• 마리나 및 관련 산업 법제 현황 분석: 수중레저법 • 마리나 및 관련 산업 법제 개선방안: 수중레저법
6	• 과제명: DAN Annual Diving Report • 연구자(년도): Divers Alert Network(2020) • 연구목적: 2018년 기준 수중레저활동자 안전사고 현황 및 원인 분석	• 설문조사 • 사례분석	• 수중레저 안전사고 발생 현황 • 국가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 프리다이빙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7	• 과제명: NOAA Diving Standard & Safety Manual • 연구자(년도): NOAA(2025) • 연구목적: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수행하는 잠수활동의 안전기준 제시	• 전문가 자문 • 사례분석	• 잠수활동자 자격 및 훈련 • 잠수 및 지원 장비 • 잠수 기준 및 절차 • 잠수활동 기준 및 절차
8	• 과제명: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정경화(2020) • 연구목적: 국내외 수중레저 관련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수중레저법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국내 수중레저 관련 법률 • 해외 주요국 수중레저 관련 규제 현황 • 수중레저법 개선 방안
9	• 과제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연구 • 연구자(년도): 윤병두(2020) • 연구목적: 연안사고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국내 연안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 • 안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해외 안전관리 사례 분석 • 안전관리 개선 방안
10	• 과제명: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스쿠버 레스큐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연구자(년도): 한동일 외(2022) • 연구목적: 스쿠버다이빙 레스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설문조사(델파이 기법)	• 스쿠버다이빙 레스큐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 스쿠버다이빙 레스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11	• 과제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자(년도): 장유락(2025) • 연구목적: 수중레저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문헌조사 • 사례분석	• 수중레저활동의 개념 및 현황 • 국내외 수중레저 관련 법제 • 수중레저법 안전관리 강화 방안

4.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수중레저 교육 인정단체

〈부록 표 1-1〉 해양수산부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목록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2017-1	세계스킨스쿠버연맹	강경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70, 제1호 911실
2017-2	(사)대한잠수협회	신희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73, 1020, 1021호 (원흥동, 원흥한일윈스타 지식산업센터)
2017-4	SDD Internataional / RAID	김동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99
2017-5	PSAI KOREA	성낙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4, 4층 402호 (대방동, 동남빌딩)
2017-6	NAPD	박구원	경남 통영시 무전6길 5, 세정빌딩 4층
2017-7	NASDS KOREA	장준득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5길 25, 해왕빌딩
2017-8	ANDI International KOREA	장준득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35길 25, 해왕빌딩
2017-9	IANTD	손완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두류다이빙풀장
2017-10	NDL KOREA	박병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754번길 17(청룡동) 3층
2017-1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	홍성훈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10다길 52, 1층(마장동)
2017-12	SSI KOREA	우대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17번길 1(금곡동)
2017-13	BSAC KOREA	박종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84, A동 904호 (영덕동, 기흥힉스 유타워)
2017-14	(사)한국산업잠수협회	차주홍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로 159
2017-15	SDI.TDI.ERDI	정의욱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5-20번지, 오션빌딩 3층
2017-16	NAUI	이성훈	9030 Camden Field Parkway Riverview, FL 33578 USA
2017-17	UTR KOREA	김철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240, 103/13층 5호
2017-18	NASE KOREA	김동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8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 월드컵스포츠센터 스킨스쿠버다이빙 풀)
2017-19	UTD KOREA	박재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강가창로 105번길 26
2017-20	IDIC	김정훈	서귀포시 서귀동 756-1, 2층
2017-21	IDEA-ASIA	김석철	제주 서귀포시 호근북로 167번길 50-4
2017-22	PDIC-SEI ASIA	김화령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50, 4동
2017-23	SNSI KOREA (국제잠수안전협회)	유재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28-31, 3층
2017-24	YMCA SCUBA (서울 YMCA)	김인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2017-25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강철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SK 핸드볼경기장 112호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2017-26	KPSDA ((사)한국공공안전잠수협회)	성낙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4, 4층 402호 (대방동, 동남빌딩)
2017-27	PADI	Matthew Hill	3/4 Skyline Place Frenchs Forest NSW 2066 Australia
2017-28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강경순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470, 제1호 122실
2017-29	AFIA	노명호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20, 현대지식산업센터 2차 D동 518호
2017-30	ACUC	윤덕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5번길 20번지 월드유통 C동
2017-31	국제잠수교육협회(ISEA)	오재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38, 2층 201호 (주안동)
2017-32	(사)대한안전연합	정현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05, 4층
2017-33	㈜산업잠수협동조합	정준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심길 121-10
2019-1	AIDA KOREA	신지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3동 438-8 2층
2020-1	(사)한국레저안전협회	한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16 지하 1층
2020-2	PTRD KOREA	정문진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4층 419호
2022-1	Global Underwater Explorers	Jarrod Jablonski	18487 High Springs Main St., High Springs, FL 32643,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2022-2	PSA	조양희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42번길 22, 브라운스톤 106동 1301호
2022-3	ASTD(에이에스티디)	이남길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97(백운동)
2022-4	유티에이(UTA)	임영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45, 상가 102호
2023-1	에이피디아이(APDI)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검은여로 85-1, 별채(토평동)
2023-2	PSS(한국지사)	Aucelli Margherita, 박동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자작도선사길 110 보키하우스 내 (본사: Via Diocleziano, 350, 80125, Napoli, Italia)
2023-3	(사)한국스포츠레저교육협회	유동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5길 32, 지하1층 (상계동, 금호프라자)
2023-4	한국프리다이빙협회(KFA)	최재호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오산항길 59, 1층
2024-1	공공재난안전구조협회	김춘희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500, 4층 419호
2024-2	아일렉(ILEC)	권동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35, 한솔프라자 3층
2024-3	국제 다이빙 협회(IDA)	강성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15번길 3-1
2024-4	MFI	강성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15번길 3-1
2025-1	몰차노브 코리아 (Molchanovs Korea)	김봉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157, 2층
2025-2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김경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7층

주: 2025년 12월 기준
자료: 2025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16호, 2025.7.4.)

〈부록 표 1-2〉 해양경찰청 수중형 체험활동 자격 인정단체 목록

연번	단체명	비고
1	(사)한국잠수협회(KUDA)	해수부 중복
2	ACUC KOREA	해수부 중복
3	BSAC KOREA	해수부 중복
4	CMAS KOREA	해수부 중복
5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해수부 중복
6	IANTD KOREA	해수부 중복
7	IDEA ASIA	해수부 중복
8	IDIC	해수부 중복
9	NASDS KOREA	해수부 중복
10	ANDI KOREA	해수부 중복
11	NASE KOREA	해수부 중복
12	NDL KOREA	해수부 중복
13	PADI Asia Pacific	해수부 중복
14	PDIC-SEI ASIA	해수부 중복
15	PASI KOREA	해수부 중복
16	RAID/SDD INTERNATIONAL	해수부 중복
17	SDI/TDI/ERDI/PFI	해수부 중복
18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해수부 중복
19	SSI KOREA	해수부 중복
20	UTR KOREA	해수부 중복
2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GSA)	해수부 중복
22	NAUI	해수부 중복
23	PSDC	
24	ISEA	해수부 중복
25	AFIA	해수부 중복
26	(사)대한안전연합	해수부 중복
27	NAPD	해수부 중복
28	잠수교육연구협회(ASDS)	
29	AIDA KOREA	해수부 중복
30	한국레저안전협회	해수부 중복
31	UTD KOREA	해수부 중복
32	서울YMCA	해수부 중복
33	GUE	해수부 중복
34	PTRD KOREA	해수부 중복

주: 2025년 1월 기준
자료: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자격 인정단체 현황(검색일: 2026.2.7.)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5년

01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 및 투자효과 분석	김주현
02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이슬기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여진
04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김미주
05	해양 복합위협의 실효적 대응 방안 연구	민영훈
06	해양 위성정보 활용 방안 연구	조성진
07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안지은
08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대응 방안 연구	임경희
09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명화
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혜진
11	수산물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남수
12	어촌과 연안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다생활권 도입방안 연구	박상우
13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병주
14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류희영
15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전서연
16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다예
17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
18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김근섭
19	재난·재해 대비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공급망 대응 방안 연구	최나영환
20	국제물류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안 연구	김동환

2024년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지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5년

01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이정아
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03	유기수산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04	선원 복지 개선방안 연구 – 선내 급식을 중심으로	허성례
05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원
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07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박상우
08	해양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정세미
09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육근형
10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이종필
1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민영훈
1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김가현
13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	김우선
14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장원근
15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이정미
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구축·활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 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방안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5년

01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김성은
02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재원 조성 방안	이윤정
03	한-아세안 해양협력 전략적 강화방안 연구	최지연
04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박찬엽
05	해조류 활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조헌주
06	미국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조선산업의 영향 분석 연구	김한나
07	해상운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효과 분석	최영재
08	스마트항만 개발 효과 산정 방법론 연구	안승현
09	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신정훈
10	비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산정을 위한 적정 점유율 기준 연구	이화섭
11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조지성
1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중개 플랫폼 모델 개발	권보배
13	미국 이력 추적 의무화에 따른 수산물 수출기업 대응실태 분석 연구	박혜진
14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한기욱
15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이상규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 중심으로	조헌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 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 철광석, 화학공업생산품, 기타광석, 잡화를 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수시연구 2025-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인 쇄 2026년 6월 28일
발 행 2026년 6월 30일

발 행 인 조 정 희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Underwater Leisure Activities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값 15000 원
93300
9 791168 662865
ISBN 979-11-6866-286-5